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역사와 오늘

천혜의 자연환경에 행복한 교정교회를 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의 공간

전문적 협업으로 사수한 '의료 골든타임'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

외부 칼럼

수용자 교정교화의 지름길, '라포 형성'

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금용명

안동형무지소와 근대 행형의 전개

교정 논문 한도완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상)

교정 리포트 허경미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전문가 칼럼 오경식

교정행정의 혁신, 가능할까?

교정 판례 박규연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과 국가배상책임

교정 백과 곽대훈

교도소 밀반입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 NEWS



9 77267 1930009
ISSN 2671-9304

03

2023 March + Vol. 562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3

2023 March + Vol. 562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3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역사와 오늘

천혜의 자연환경에 행복한 교정교화를 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04

교정의 공간

전문적 협업으로 사수한 '의료 골든타임'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

10

외부 칼럼

수용자 교정교화의 지름길,
'라포 형성'

14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안동형무지소와 근대 행형의 전개
금융명 | 교도소연구소 소장

16

교정 논문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상)
한도완 |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위

42

교정 리포트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허경미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66

전문가 칼럼

교정행정의 혁신, 가능할까?
오경식 | 한국교정학회 회장

88

교정 판례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과 국가배상책임
박규연 | 광주지방교정청 교감

90

교정 백과

교도소 밀반입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사례를 중심으로
곽대훈 | 충남대학교 교수

108

교정 NEWS

124

모범 공무원

133

독자마당

134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정본부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행복한 교정교화를 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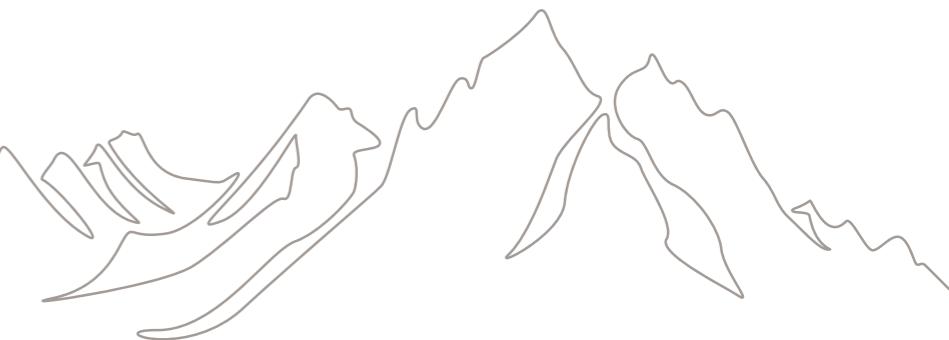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함'을 뜻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은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교정교화할 때 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정공무원이 행복한 마음으로 수용자를 대하면 교정교화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아지기 마련인 것. 산과 물이 어우러진 절경에 둘러싸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행복한 교정교화를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1

산수 좋은 곳에 자리한 '신뢰의 교정시설'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의 연속이다. 서안동IC를 거쳐 국도를 40분가량 타고 들어가는 와중에 맞닥뜨리는 낙동강은 갈대를 맑은 은빛으로 일렁이고, 진보면과 교도소 부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광덕산의 기암괴석은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다. 여기에 광덕산 바로 아래에서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감싸 안 듯 휘돌아 흐르는 반변천까지 더해지니, 한 폭의 수묵화가 따로 없다.





산 좋고 물 좋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981년 10월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첫발을 뗀 뒤 1983년 청송교도소로 개칭됐으며, 201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뒤 오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면을 대고 붙어 있는 3개 교도소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시설 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017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4개 교도소의 경비 및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시설물 점검·산불 감시·화재 예방, 유사시에는 도주 수용자 수색·인근 군부대와의 통합 연계 작전 등에 드론을 투입하는 것. 이처럼 교정시설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지역사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도소를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2

쾌적한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교도 직급의 교정공무원 비율이 높은 '젊은 교도소'다. 워낙 공기가 맑고 자연이 좋아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심지와 가까운 교도소와 달리 근무 후 즐길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고충이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MZ세대 직원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위라밸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보안과 직원 휴게실에는 안마의자·당구대·PC실 등을 충실히 갖췄는데, 특히 근무 전후 출출함을 달랠 수 있도록 텅비실을 설치한 점이 눈에 띈다. 음식물 보관을 위한 냉장고는 물론 전기인덕션·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어 등이 마련돼 있어 언제든 손쉽게 허기를 채울 수 있다. 한편 야간 상황대기 침실은 최근 1인 1실 형태로 총 20개 실을 리모델링했으며, 침대·옷장·시스템 에어컨을 도입해 한층 쾌적한 휴식이 가능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3교도소 및 직업훈련교도소와 통합 청사를 함께 쓰고 있는데, 최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에 돌입했다. 업무 중 재충전이 필요한 사무실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기 위함이다. 현재 나무데크야간 명·벤치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햇빛을 가려 줄 정자를 짓고 잔디와 조경수를 곳곳에 심는 등 '청사 속 작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

직원 행복으로 실현하는 ‘행복한 교정교화’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외지에서 온 직원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오래된 비상대기숙소를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매년 1~2동씩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6개 동 중 14개 동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2동인 15동과 18동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모델링한 비상대기 숙소에는 에어컨·냉장고·가스레인지 등을 기본 제공해 가전기기 장만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도 한결 줄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MZ세대 직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위라밸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08



올 1월에는 직원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상 대기숙소 공원이 새로 마련됐다. 최신 조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나무데크 벤치를 마련해 세련미를 더했으며, 햇빛이 세거나 비·눈이 오는 날에도 편안하게 바람을 쐄 수 있도록 거대한 고정형 차양막을 설치했다. 한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020년 1월부터 직원들이 많이 사는 안동과 교도소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40~50분 운전해야 하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갈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후문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올해 운동하는 MZ세대 직원의 증가에 발맞춰 복지관을 체력단련시설로 전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고로 활용하던 비상대기숙소 관리동을 빨래방 및 독서실로 리모델링하는 등 앞으로도 직원들의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 행복과 진심이 깃든 교정교화를 위해 직원들의 행복을 더욱 살뜰히 챙기겠다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다짐과 변화를 응원한다.



09

전문적 협업으로 사수한 ‘의료 골든타임’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

때때로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은 한순간의 판단과 조치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는 그 찰나의 순간인 ‘의료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진료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전화 바로 받기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협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전화 받기'에 담긴 의료과의 저력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수용자가 1천 명이 넘는 대규모 교정시설로, 한주섭 과장을 포함한 18명의 의료과 직원들은 그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간다. 어찌나 깊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울리는 전화벨이 한 번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특히 전화가 올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직원 두세 명이 한꺼번에 전화기를 집어 듣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의료과 전체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전화 받기는 사소한 일상 업무에 속하지만, 전화가 왔을 때 여러 명이 곧바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의료과의 업무 집중도와 분위기를 잘 설명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과는 공통 업무가 많기에 전화를 받는다는 건 곧 해당 직원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다른 직원에게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동료를 배려하는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아가 직원들은 서로의 업무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몇몇 직원에게 일이 쏠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죠. 쉽

게 말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동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확신이 직원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그만큼 수용자들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과의 최대 장점이라고 봅니다."

효율적 체계 정립으로 극대화한 진료 역량

18명의 의료과 직원이 1천 명 넘는 수용자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려면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진료가 시급한 환자를 선별하고 중증도에 따라 의료 역량을 분배해야 전반적인 수용자 건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회 진료-의료과장 진료-외부 의료기관 진료'라는 3단계 의료 체계를 정립했다.

첫 번째 단계인 순회 진료는 공중보건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요일별로 수용동 및 작업장을 직접 찾아가 진료 신청한 수용자를 돌본다. 현장 근무 직원들이 수용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황을 자세하게 기술한 진료·투약신청서를 토대로 수용자와 마주하기에 보다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의는 순회 진료 단계에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선별해 의료과장에게 전달, 2차 진료가 이뤄지며 의료과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환자는 외부 의료 기관에 진료를 의뢰함으로써 역량 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진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물론 긴급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속 정확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작년 하반기 어느 밤에 한 수용자가 명과 통증이 생겼다며 내원했습니다. 당시 숙직을 서던 직원은 증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공중보건의에게 연락, 화상 진료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급성백혈병으로 보이며 외부 응급진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검사 결과 급성백혈병이 맞았으며 하루



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중할 뻔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증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신속하게 조치한 우리 의료과의 전문성이 돋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키우고 나누다

'눈치 보지 않고 전화 받기'에서 비롯된 믿음과 배려는 고스란히 의료과 직원들의 활발한 소통과 팀워크 증진으로 이어졌다. 의료과는 남부럽지 않은 팀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여름철 자체 수영교실을 열어 바닷가로 단합대회를 떠나고, 겨울에는 캠핑장을 빌려 캠핑 특유의 정취와 힐링을 만끽한다.

"이번 겨울 캠핑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의료과에 갓 전입 온 신입 직원이 공무원 음악대전에 출전하기 위해 한창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선배 직원이 전자 피아노를 공수해 와서 예선전에 대비한 미니 연주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신입 직원의 아름다운 연주에 이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악기 앞에 앉았고,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감미로운 캠핑을 즐겼습니다. 우리 과의 좋은 분위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죠."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과는 올해 큰일을 앞두고 있다. 진료실과 사무실을 한층 넓히는 중축공사가 예정돼 있는 것. 월간 <교정> 취재진이 축하 선물로 가습기와 라면 조리기를 선물하자, 직원들은 덕분에 더욱 쾌적하고 든든한 환경에서 수용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미소 지었다. 수용자들의 건강을 향한 직원들의 진심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는 기분 좋은 웃음이었다.

MINI INTERVIEW

우리는 교정교화의 가장 중요한 밀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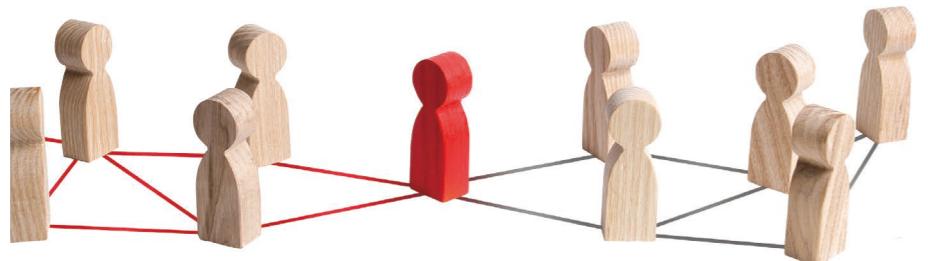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용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도, 출소 후 건실한 삶을 꿈꾸며 노력하는 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교정교화의 가장 중요한 밀거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고 있는 우리 과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단합된 전문성으로 수용자 건강을 빛틈없이 지켜 나갑시다!"

의료과 한주섭 과장

수용자 교정교화의 지름길, ‘라포 형성’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짓값을 치른 뒤 다시 사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다. 교정공무원은 이들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교화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교정교화의 지름길’이 있으니, 바로 수용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일이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교정교화의 효과를 좌우하는 라포

새로 전입 온 직원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날씨 등에 대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눌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쩌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막상 일에 돌입하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공동의 목표를 신속 정확하게 이를 수 있도록 돋는 유효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교정공무원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이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자면 수용자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야 하며, 교정교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수용자들이 건전하고도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요컨대 수용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법 집행과 교정교화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수용자와의 라포 형성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라포 형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우며, 그만큼 출소 후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수용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포 형성의 첫걸음, ‘공부’와 ‘관심’

라포 형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단순한 라포’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공통분모가 많을 때 이뤄지는 가장 쉬운 라포 형성 유형이다.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두터운 라포를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즉흥적 라포’로, 성장 환경과 그간의 경험이 상이하지만 몇몇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서서히 라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인 ‘맞춤식 라포’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렇다 할 공통점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로, 이럴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공부와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눈에 띄는 공통점은 없을지라도 상대가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마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할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라포 형성 유형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 수용자가 오면, 먼저 수용자 정보와 기록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면담에 임한다면, 하다못해 먼저 이름이라도 물려준다면 수용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릴 것이다. 특히 수용자는 낯선 환경과 교정시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의기소침하거나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와의 단절과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따뜻한 관심과 온정에 목말라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교정공무원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라포 형성 전 먼저 수용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의 균형을 맞추자

수용자에 대해 공부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포를 형성할 차례다. 수용자와 보다 수월하게 라포를

형성하려면 첫인상부터 단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버트 메라비언은 1971년 출간한 저서 『Silent Messages』를 통해 ‘메라비언의 법칙’을 발표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으로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로 이뤄져 있다는 법칙이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단정한 용모를 하고 수용자와 마주 앉았다면,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보자.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음을 눈 맞춤으로 알리는 것이다. 시선을 얼굴 이외에 다른 곳으로 두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말에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벼운 맞장구를 쳐 주는 것도 대화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용자와의 대화 시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미러링(Mrrorring)’ 기술을 사용해 보자. 말 그대로 거울처럼 상대방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가 눈치챌 정도로 모든 언행을 따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다. 수용자가 커피를 마신 후 조금 있다가 커피잔을 들고, 수용자가 의사에 기댈 때 슬그머니 같이 의사에 기대는 정도면 충분하다. 수용자가 강조하는 구절이나 즐겨 사용하는 단어를 때때로 함께 사용하는 것도 훌륭한 미러링 기술이다.

이러한 소통의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큰 도움을 준다. 물론 라포를 형성할 때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수용자와 과도한 친밀감이 형성되면 오히려 수용 질서를 깨트리거나 교정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하되 각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수용자와의 라포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동형무지소와 근대 행정의 전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안동교도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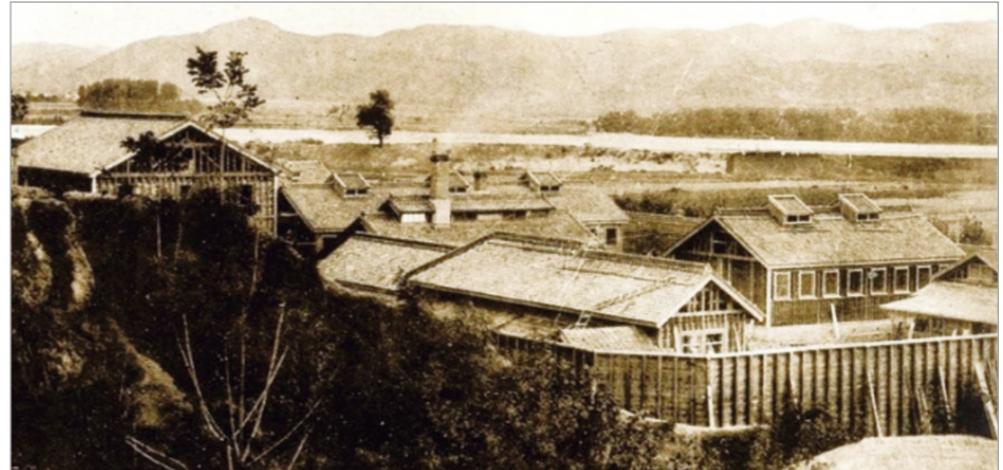
1. 총설
2. 안동형무지소 건축구조
3. 직원
4. 수용자
5. 식사 및 의복비 등
6. 형무작업
7. 위생 및 의료
8. 교육과 교화
9. 안동형무지소 해방의 기록
10. 결어

1. 총설

1921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1호의 태형폐지에 의한 감옥확장계획에 따라 김천 및 안동에 양 분감을 신설하고 김천분감은 같은 해 7월 15일, 안동분감은 같은 달 18일에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안동에 감옥을 건축할 필요성에 대하여 청원을 하였다.¹⁾ 1923년 5월 5일 대구형무소 안동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다가 1938년 김천소년교도소 안동지소로 수용구분이 변경되어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운영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당일 수용인원은 소년수형자 290명, 미결수용자 32명 중 30명이 소년이었다. 30명은 모두 농림고등학교 학생으로 당시 안동지역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기록과 일치한다.

1921년 건축된 건물은 한국전쟁 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청사동과 여사, 주벽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청사동은 1986년 현재지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특히 청사동은 건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이었음이 1986년 현재지로 이전하면서 남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

대구감옥 안동분감 전경



1 안동분감은 미정(1915년 9월 4일 조선시보)

대구감옥 분감을 안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동 지역의 유지 등이 대구로 와서 요청하였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청원하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분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과연 안동이 적당한 지위가 되는지 여부도 문제이다. 그러나 설치될 경우에는 유력한 후보지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확실하다. 분감의 출현 시기는 경비 그밖의 관계상 올해 내에는 6개소가 결정될 예정이며 안동분감은 내년 무렵이 될 수밖에 없다.



1923년 5월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로 개칭하고 전옥(典獄)의 관명(官名)을 두고 형무소장의 직명(職名)이 신설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감옥이라는 문자는 곧바로 구시대의 뇌옥(牢獄)을 연상시키고 어조가 생소하여 재감자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친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칭하여 행형의 내용과 외관 모두를 일신하고 근대형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에 있었다. 통감부 및 총독부의 초기 감옥은 이전 시대의 불완전하고 통제되지 않았던 감옥제도의 뒤를 이어받아 열의로 그 개량과 확장에 노력하였으며 한일병합 직후 3·1운동 중에는 오직 구금의 적절함과 규율의 유지에 주안점을 둔 계호행형시대로 운영되었다.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대형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1925년경부터 작업행형시대로 들어섰고 이어서 교육행형시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시행형시대에 직면하여 행형운영은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고 해방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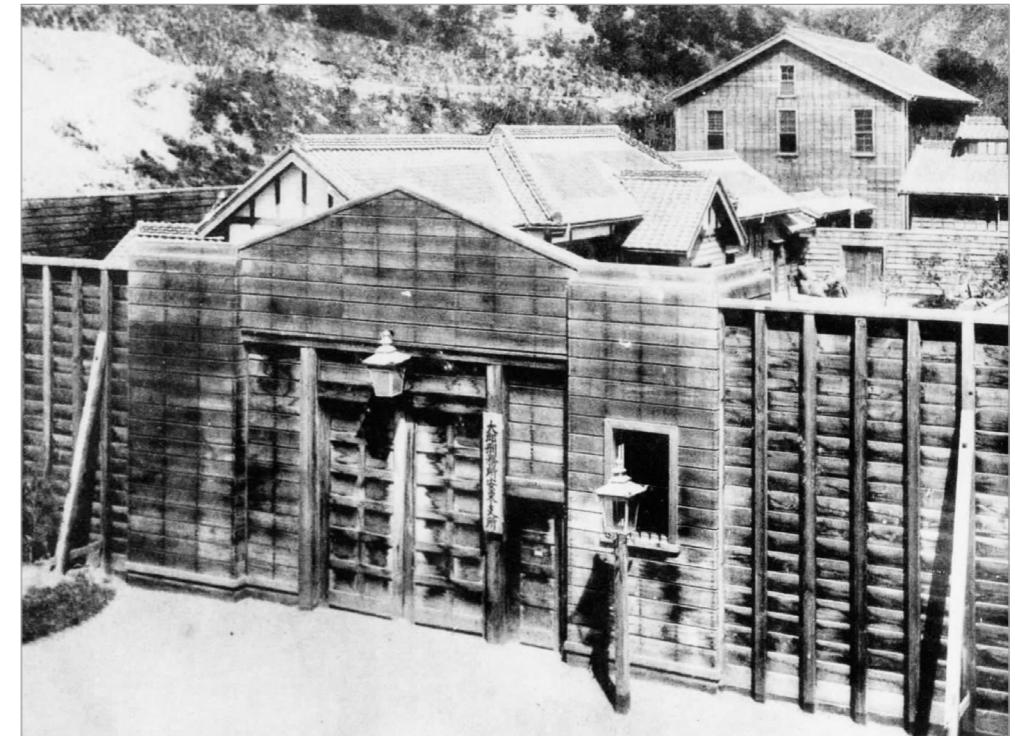
2. 안동형무지소 건축구조

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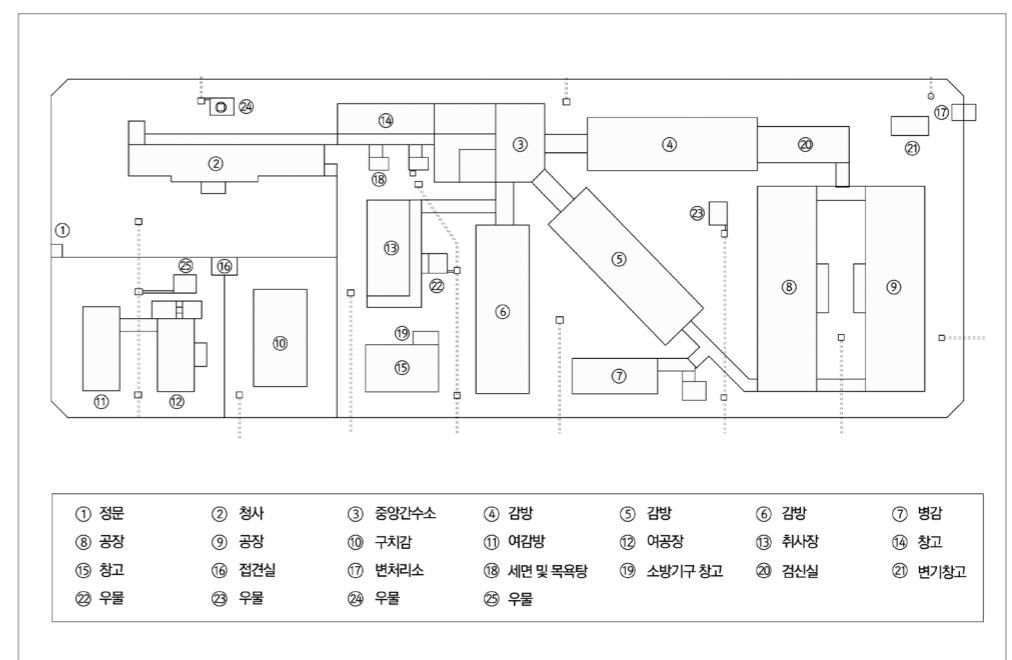
1921년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진과 도면 등을 통해 전체 위치, 각 사무실의 규모와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주벽은 건축 당시 목조였으나 1920년대 말에 벽돌주벽으로 개축되었으며 관사 등을 제외한 건물은 주벽 내에 위치하였다. 안동분감을 공사 중에 사고로 공사인부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기도 하였다.²⁾

한국전쟁으로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청사, 여사, 감시대, 주벽 등은 남았으며 한국전쟁 후 수용동과 주벽 등의 건축물을 복구한 후 신세동 시대(해방 이후부터 1986년까지)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형무소로 승격되면서 이 청사건물에는 소장실과 보안과를 두면서 정문밖에 건물을 지어 서무과, 작업과, 용도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안동형무지소 정문



안동형무지소 배지도



²⁾ 1920년 1월 21일 매일신보

구분		방수	내촌 평수		건평	비고
			1방 평수	합계		
남구	미결장	독거	6	1.22	7.32	
		혼거	4	3.66	10.64	
	징역장	독거	26	1.22	31.72	
		징벌방	2	0.82	1.64	
		혼거	28	2.66	74.48	
	병사	독거	1	1.63	1.63	
		혼거	3	3.46	10.38	
여구		독거	1	2.00	2.00	
		혼거	2	3.00	6.00	
계		73		145.81	2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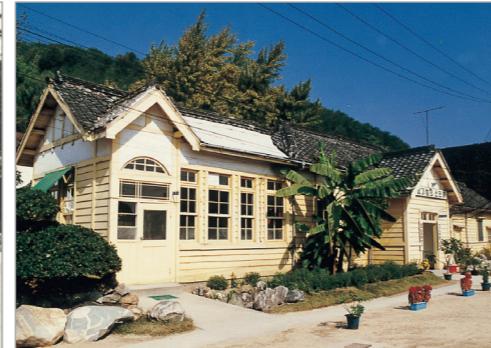
나. 청사

청사는 정문안쪽에 위치하였으며 한국전쟁 중에도 그대로 남아 풍산읍으로 이전 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건물은 목조단층건물로 매우 정교하게 건축되었다. 청사에는 회의실, 사무실, 조사실, 보관물품실, 입소실, 탕비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무실의 규모는 12.73m×5.45m(약 20.99평), 회의실의 규모는 3.63m×4.55m(약 5평)이었다.

청사(일제강점기)



청사(1986년)



간이 위치하였으며 나중에 수용동 3동이 증축되었다.

남자수용동은 총 3개가 있었다. 수용동은 중앙에 복도를 두고 거실이 마주보는 중복도 형태로 한 동에 있는 거실은 한 쪽에 7개로 모두 14개가 있었다. 수용동은 12.72m×8.18m(약 62.97평)이고 한 개의 거실은 3.64m×2.72m(약 2.99평)이었다.

안동형무지소 남자수용동



여자수용동은 정문 안쪽에 위치하였으며 혼거실 3개와 독거실 1개가 있었다. 규모는 12.72m×5.45m(약 20.97평)이고 혼거실은 3.64m×3.64m(약 4.01평)이며 독거실은 1.82m×3.64m(약 2평)이었다. 여공장에는 여직원 근무실, 여자수용자 목욕탕과 화장실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었다. 1937년 4월 11일 오전 7시에 당직여간수가 취업자 4명을 계호하여 탕비용 화로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풍로로 바람을 불던 중 불씨가 날라서 뒤쪽 약 2.7m 떨어진 개소에 쌓여있던 교체용 면(약 187.5kg)에 점화하여 연소하여 피해액이 7,990원에 달하였다.

병동은 수용동과 수용동 사이에 위치하였다. 병동은 12.72m×5.45m(약 20.97평) 규모로 혼거실 3개와 독거실 1개로 구성되었다. 혼거실은 3.64m×3.64m(약 4평)이고, 독거실은 1.82m×3.64m(약 2평)이었다. 병동과 인접하여 욕실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병동으로부터 수용동과 공장으로는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이곳의 목욕탕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1922년 2월에는 화장실 건물과 연결하는 형태로 소독실이 증축되었다. 소독실의 규모는

다. 수용동

수용동은 남자수용동과 여자수용동 그리고 구치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 목조단층 기와건물이었다. 기결수용동은 3동으로 중앙간수소에서 부채꼴 형태로 위치하였으며 회랑을 통해 공장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수용동과 공장 사이에는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하는 공

2.72m×1.82m(약 1.5평)이었다.

구치감은 한 동이 있었으며 혼거실 4개와 독거실 6개가 있었다. 구치감의 규모는 14.55m×8.18m(약 36평)이었고 구치감의 혼거실은 3.64m×2.73m(약 3.01평), 독거실은 1.82m×2.73m(약 1.5평)이었다.

중문 안쪽에 있는 목조 2층 건물이 있었으며, 1층은 판자바닥의 공간 2곳과 중앙간수소가 위치하였고, 2층은 교회당으로 사용되었으며 판자바닥이었다. 교회당에는 각 수용동으로부터 중앙간수소를 지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규모는 12.58m×11.81m(약 44.94평)이었다. 교회당 내에는 연단과 불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1층에 위치한 판자바닥의 공간은 직원 침실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수용자 교육이나 직원 교육실로 사용되었다. 중앙간수소는 3개의 수용동으로 연결되는 중앙에 위치하였고 수용동과는 각각의 회랑을 통해 연결되었다.

라. 공장동

공장동은 2동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각 수용동과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한 동의 규모는 30.90m×9.09m(약 84.97평)이었으며, 화장실과 세면실이 공장건물에 부속되어 있었다.

중문 내에 위치한 취사장과 목욕탕은 한 동의 건물로 건축되었다. 취사장 바로 옆에는 우물이 있어 취사, 세척, 청소 등에 사용되었으며 주식과 부식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 그리고 화재 시 필요한 소방용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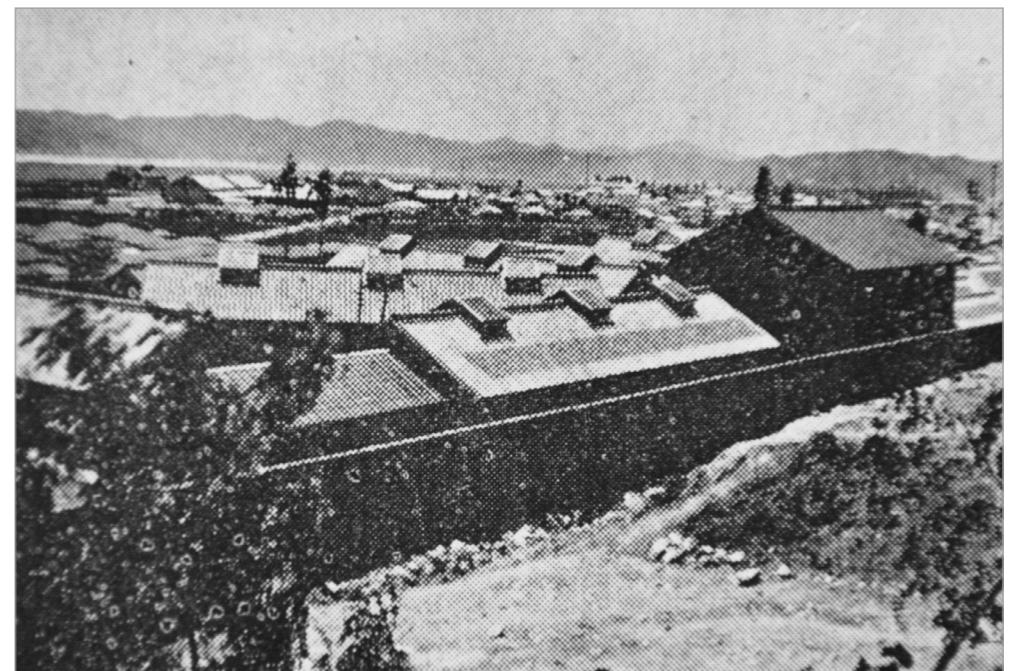
경운지는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을 끼고 북쪽 방향에 위치하였다. 경운지에는 숙소, 창고, 소를 키우는 우사 등의 건물이 있었으며 설계도면이 남아있다. 창고는 목조단층건물로 오른쪽 문을 통해 창고 내부로 출입하는 구조였으며 왼쪽을 통해서는 출입문이 2곳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 공간이 2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실로 보인다. 나중에는 수용자가 출역하여 외박작업장으로 사용되면서 수용동과 감시대 등의 건물이 만들어졌다. 창고의 규모는 18.18m×9.09m(약 50평 규모)였다. 우사는 판자바닥의 방과 흙바닥의 공간 2곳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9평 규모였다. 화장실은 소변기와 대변실이 있었으며 소변기 아래쪽은 소변을 모아 거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변을 모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매설하고 밖에서 소변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 그 밖의 건축물

접견소는 청사 건물과 구치감 및 여수용동을 구분하는 내 주벽에 연결된 형태로 건축되었다. 규모는 3.64m×2.72m(약 2.99평)으로 중앙을 구분하여 접견민원인과 수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접견을 하도록 하였다. **세면욕실**은 2곳이 있었으면 한 곳은 취사장과 창고 사이에 있었고 나머지 한 곳은 병동과 공장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창고는 2곳이 있었으며 한 곳은 취사장과 인접한 창고는 쌀, 보리, 콩 등을 보관하는 주부식 창고로 사용되었고, 규모는 15.54m×6.36m(약 29.9평)이었다. 바닥은 판자바닥과 흙바닥이었고 판자바닥 위에 물건 등을 보관하였다. 또 하나의 창고는 18.18m×7.27m(약 40평) 규모로 흙바닥의 목조단층건물이었다. 취사장 창고에 연결된 형태의 소방창고를 증축하였다. 규모는 3.64m×3.03m(약 3.34평)이었다. 관사는 2동이 있었으며, 한 동은 2층 목조건물이었고 나머지 한 동은 단층목조건물이었다.

주벽은 1921년 건축 시에는 판자벽으로 만들어졌으나 1920년대 말에 연와조로 개축되었다. 판자벽은 비늘판벽의 형태로 만들어져 내부에서는 도주가 어려운 구조였다. 주벽의 높이는 2.72m였으며 상부를 둥글게 마감하여 도주를 방지하였다. 주벽의 길이는 총 412.49m로 도로쪽 143.71m, 산쪽 147.49m, 정문쪽 56.05m, 반대쪽 세로 51.05m, 그리고 세 곳의 주벽도 서리부분 각각 4.73m이었다.

안동형무지소 전경



우물은 총 4곳이 있었으며 음료수, 취사, 세탁,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취사장 옆에 위치한 우물은 취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여수용동 구역 내에 위치한 우물은 여자수용자의 목욕, 세탁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청사 뒤편에 있는 우물은 직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한 곳은 감방과 공장 사이에 있었으며 수용자용으로 사용되었고 운동 후 목욕과 세면, 청소 등에 사용되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하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사용한 물은 하수설비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하였다.

3. 직원

가. 현황

안동분감은 대구감옥의 분감으로 설치되었으며, 조직구성은 분감장과 서무, 보안, 작업, 교무, 용도, 의무계로 구성되었다. 1923년 2월 21일 분감장에 이시카와(石川亥之松)가 임용되었다. 1939년 3월 1일 직원 정원표에 따르면 당시 큰 규모의 기관에는 배치되었던 감옥통역생, 보건기사, 약제사, 교사, 교무총탁, 작업기사, 운전수, 기관수, 화부, 전화교환수, 급사 등이 안동지소에는 배치되지 아니하였다.

직원정원 정원표(1939년 3월 31일)

	전속	간수장	보건 기수	의무 총탁	교회사	간수		작업 교수	감정	계
						남	여			
한국인						20	1		5	26
일본인	1	2	1	1	1	22	1	2	1	32

※ 임시감정 한국인 3명이 근무함

나. 작업기술자 배치³⁾

임시 작업기수 요시다(吉田岩男)는 응소(육군보병 상등병)하여 제80연대에 입대 중이었으며, 지물공(목공)에서 건축에 수년간 건축 및 영선 등을 담당하고 있고 당분간 현직의 지위에서 제대 시까지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안동형무지소에서는 1938년도에 지물공에 작업기수 1명을 배치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지물공은 일반작업으로 경영하였으며 1937년

6월 기술지도자가 와서 특별작업을 하면서 지출예산 5,798円을 배부받았고 수입 8,700円의 책임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입예산액을 거두었다. 지도기술자가 있으면 취업자의 기능숙달이 지체되지 아니하여 제때에 판로를 확장할 여지가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신용을 실추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물공의 발전확장을 기할 수 있도록 법무국 행형과에 요청하였다.

4. 수용자

가. 수용자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발표한 1937년 4월 1일부터 전국 18개 형무소의 수용구분 및 1937년 7월 말 각 감옥 재감인원에 따르면 안동형무지소의 수용구분은 10년 미만의 남자수형자, 1년 미만의 여자수형자를 수용하였으며, 수용내역은 수형자 195명(여 2명), 미결 7명, 노역유치자 9명 등 계 211명을 수용하였다.⁴⁾ 1937년 3월말 현재 안동지소 남자수용자 구금상황은 독거 32개방에 32명, 혼거 85.1평에 179명(1평당 2.1명)이다. 여자수용자의 구금상황은 1927년 10명, 1928년 8명, 1929년 9명, 1930년 13명, 1931년 15명, 1932년 10명, 1933년 8명, 1934년 7명, 1935년 5명, 1936년 4명, 1937년 4명이었다.⁵⁾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일 안동지소 재감인원은 수형자(소년) 290명, 피의자 소년 30명, 피의자 청년 2명이 있었다.

나. 수용현황

1) 재소자 출입상황(1934년~1938년)

연별	연인원	1일 평균인원	입소	출소	연말현재
1934년	93,075	255	761	836	222
1935년	83,093	227	719	718	223
1936년	80,222	219	502	518	207
1937년	74,439	204	426	425	207
1938년	81,876	226	446	413	240

3 안동형무지소, 작업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건, 1938년 2월 5일(국가기록원).

4 치형협회, 조선의 행형제도, 1938. 11. 20. / 전 조선 18개 형무소 수용구분 발표, 1937년 3월 25일 조선일보

5 안동형무지소, 재해복구비 예산요구에 관한 건, 1937년 4월 14일(국가기록원)

2) 형사피고인 입출소 현황(1928년~1939년)

연도	연인원	1일 평균인원	입소	출소	내역							연말 현재
					석방	사형집행	형집행	형집행유예	보석청부	사망	기타	
1929년	4,008	11	130	119	6		68	11	-	1	33	15
1930년	6,418	18	130	138	9		72	10	-	-	47	7
1931년	3,807	10	142	147	7		94	11	1	-	34	2
1932년	6,489	18	155	148	2		100	12	-	-	34	9
1933년	5,470	15	144	134	7		72	24	4	1	26	19
1934년	4,740	13	91	108	4		64	2	1	1	36	2
1935년	2,653	7	85	84	6		54	10	1	-	13	3
1936년	2,001	5	58	57	2		38	-	1	-	16	4
1937년	3,788	10	171	158	66		59	-	-	-	33	18
1938년	8,442	23	139	125	10		74	3	8	1	29	32

3) 신수형자 죄명별 인원(1934년~1938년)

죄명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강도	16	5	8	11	5
절도	82	106	97	105	101
특수절도	3	4	2	9	13
사기횡령	17	23	14	9	19
살인	1	2	-	-	-
상해	10	8	3	5	5
방화	2	2	-	1	-
문서 및 유가증권 위조	7	1	3	7	-
치안유지법위반 및 기타	-	3	2	-	-
기타	34	19	23	16	38
계	172	173	152	163	181



4) 신수형자 형기별 인원(1934년~1938년)

형기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무기					
10년 이상					
10년 미만	10	5	5	8	5
5년 미만	31	27	24	28	20
3년 미만	62	86	65	66	66
1년 미만	65	50	47	56	85
6월 미만	-	3	8	3	5
3월 미만	4	2	3	1	-
계	172	173	152	163	181

5) 신수형자 범수별 비율(1938년)

범수별	초범	재범	3범 이상	6범 이상	계
인원	103	29	37	12	181
총인원대비율	57.0	16.0	20.4	6.6	%

6) 수형자의 연령별 인원(1939년 4월 1일)

연령별	18세 미만	18세 이상	20세 이상	4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계
남	-	5	174	18	3	-	200
여	-	-	1	-	-	-	1

7) 신수형자 범죄이유별 조사(1938년 중)

범죄이유	인원	범죄이유	인원	범죄이유	인원
치정	2	원한	5	난타	11
병고	1	습벽	76		2
유혹	1	이욕	34	가정불화	2
우발	8	미신	1	식욕	1
분노	4	음주	4	교의	1
유탕	12	빈곤	13		
모방	1	색욕	2	계	181

8) 수형자 직업별 인원

직업별	인원	직업별	인원
농업	42	무직	87
日稼	15	각류판매	1
목수	13	좌관 및 연와업	5
어상	3	승려	1
기타유직업	13	야채 및 과실류판매	8
피고	8	대장장이	4
잡화상	1	계	201

9) 재소자 상우 및 가석방 인원 조사(매년말 현재)

	가석방자 인원	가석방 취소인원	상우표			
			1개	2개	3개	계
1934	12	-	14	-	-	14
1935	19	-	16	-	-	16
	△2					
1936	23	-	17	-	-	17
1937	19	-	10	-	-	10
1938	12	-	7	-	-	7

10) 징벌 인원(1934년~1938년)

연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징벌 인원	12	10	14	15	13
위반사항					
항명	-	1	-	-	-
폭행	-	1	3	-	-
논쟁	-	-	4	-	-
구타	2	-	-	-	-
절식	-	-	1	4	2
물품은닉	5	1	-	-	-
물품교환	-	-	-	1	2
물품손괴	-	-	-	-	-
좌와부정	-	-	-	-	-
통성담화	-	-	-	-	-
외설	2	-	2	-	-
도박유사	-	-	-	-	-
태역	-	-	1	-	-
소품남용	-	-	-	-	-
제품조악	-	-	-	-	-
과정만착	-	2	-	4	-
도주기도	-	1	-	2	1
기타	3	4	3	4	8

5. 식사 및 의복비 등

아래 표는 대구형무소와 안동지소의 1934년부터 5년간 식비 기타 내역 조사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평균
1일평균인원	1,644	1,621	1,574	1,562	1,486	1,577
1일 1인 평균 식비 및 식량 (푼)	식비	88.235	119.271	115.820	121.870	157.200
	반찬비	13.525	12.978	13.060	16.630	24.400
	계	101.760	132.250	128.880	138.500	181.600
	식량	861	872	867	888	897
기타 1일 1인 평균액 (전)	피복비	0.641	0.722	0.540	1.001	0.452
	요양비	0.309	0.278	0.254	0.324	0.327
	잡비	3.014	2.635	2.799	2.240	3.513
	계	3.964	3.636	3.593	3.565	4.293
합계(푼)	합계	141.400	168.610	164.810	174.150	185.893
						166.973

※ 본 표의 감독비(봉급, 제급여, 청부) 및 작업비, 급여(작업상여금)을 제외한 재소자 1일 1인 평균 실비를 나타낸 것이다.

6. 형무작업

가. 현황

1921년 개소한 안동지소에는 지물공(목공), 양재봉공, 고공(藁工), 경운 등의 작업이 실시되었다. 공장동은 2동이 있었으며 경운은 안동 용상동에 있는 위치하였다. 그 후 1937년에 안동지소에서는 지물공(목공), 양재봉공, 도사공(塗師工), 혁공(革工), 경사공(經師工), 고공(藁工), 인쇄공 등의 작업이 실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연탄공, 마공(麻工), 토공(土工), 면타부(綿打夫), 세공(細工), 이발부 등의 작업이 실시되었다. 1940년대 당시 출역인원은 경운부 80~130명, 지물공 20~30명, 죽세공 20~30명, 양재봉공 10~15명, 관용부 30~40명, 휴역 기타 60~80명이었다.

공장명	업종별	취업 인원	평수	1일 평균인원	비고
제1공장	지물공 양재봉공 면타공 보철부	16 1 2 9	85	0.33	
제2공장	구류미병공	38	85	0.45	
여공장	보철부	2	18	0.11	건평 25.375평의 내 공장평수 18평임
계		68	188	0.36	

1934년도부터 5년간 안동지소 작업수입액조사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취업자 연인원	관사업	공전수지	24,136.0	21,804.4	21,147.4	22,081.8
		공전불수지	16,556.0	18,200.2	22,561.3	19,622.1
		수부업	14,963.0	13,719.3	11,373.3	1,607.0
		위탁업	12,272.0	14,045.1	10,820.2	16,071.4
		계	67,927.0	67,769.0	65,902.2	59,382.3
공전총액		7,643,897	7,839,482	8,779,672	7,771,273	8,019,946
1일 1인 평균 공전액	관사업	공전수지	106	110	117	134
		공전불수지	111	108	136	135
		수부업	111	130	172	187
		위탁업	118	113	119	115
		계	113	116	132	131
작업상여금 1일 1인 평균액		031	029	032	023	028
불취업자 연인원		13,407.0	11,471.0	10,040.8	11,003.7	12,091.9

나. 형무작업 운영

1) 지물공(목공)

1940년 지물공 취업 연인원은 관사업에 23,907명, 위탁업에 6,020명이었다. 당시 생산된 제품은 학생책상, 장롱, 양복장, 낮은 책상, 높은 책상, 서류상자, 경대, 차탁자, 당책상, 등근탁자, 정리장, 의자, 장책상, 벼루상자 등 22종에 달하였다. 1937년 6월 12일 지물공의 예상 수입액은 8,700円으로 그 중 순이익금은 1,716円이었고 1939년 수입액은 관사업 8,486円, 위탁업 6,040円이었다. 특히 1938년 특별작업의 수입예산액은 10,200円으로 학생책상 200조 800円, 사무책상 100개 400円, 장롱 3종류 23개 830円, 양복장 3종류 35개 1,080円, 좌탁 40개 220円, 높은 책상 30개 180円, 서류상자 3종 60개 613円, 식탁 2종류 50개 115円, 下駄상자 2종류 30개 175円, 차상자 6종류 125개 1,390円, 장식선반 3종 30개 280円, 당(唐)책상 3종 45개 390円, 화장대 2종 60개 90円, 등근탁자 2종 20개 90円, 레코드 기구세트 2종 10개 50円, 정리상자 30개 75円, 재봉상자 20개 70円, 경대 5개 50円, 벼루상자 2종 55개 100円, 양팔책상 2개 50円, 한쪽팔 책상 2개 90円, 의자 20개 100円, 위탁수선료 222円이었다.

지물공은 1935년부터 숙련기공의 이감을 받아 훈련실시에 노력한 결과 기능이 숙달되어 1936년 수입은 2,279円을 거두었다. 1935년도 수입 1,539円(1934년 1,453円)으로 전년도에 비해 740円의 증가를 보였으며 1937년도 초에 3,000円의 수입(다른 건축공사 3,000円)계획을 수립하여 실현에 노력하였다. 당시 안동은 중앙철도부설이 확정된 후 인구가 증가하여 건축이 수시로 행해지는 등 시황은 순조롭고 활발하여 목공제품은 현저하게 주문이 증가하였고 인근 군 또는 시골에 판로가 있었다. 당시 건축 중인 안동농림고등학교와 안동경찰서 파출소 기타 민간에 의해 총기고 23곳의 건축신청이 있는 등 목공건축과 아울러 경영에서 본 계획의 수입예상은 확실하였고 장래 유망한 작업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양재봉공에 취업하는 재감자 12, 13명을 지물공으로 전업하고 건축공을 12명 정도 증원하였다.

2) 양재봉공

1939년 양제봉공에 취업한 연인원은 관사업 8명, 위탁업 309명이었으며 쿠루메시카쓰리짜기(久留米紺織)⁶⁾ 12,491명(위탁업 2,144명, 수부업 12,49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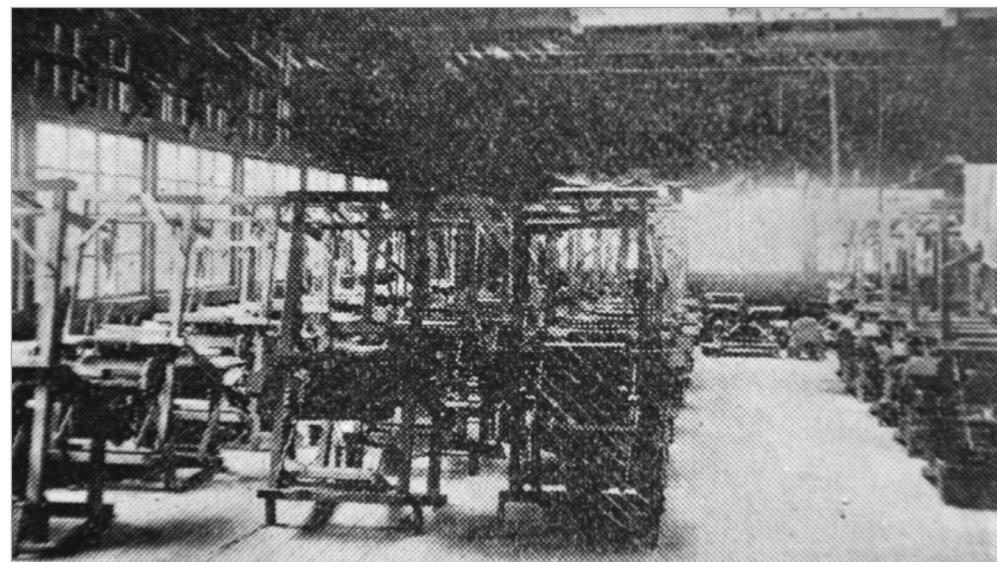
양재는 일본옷 재봉공, 양재봉공, 세탁, 쿠루메시카쓰리짜기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쿠루메

⁶⁾ 쿠루메시가스리(久留米紺) 후쿠오카현 쿠루메시와 그 주변에서 짤 수 있는 독특한 무명 감색옷감. 면실로 단단하게 옮아매 염색을 수십 번 반복하여 튼튼하게 완성한다. 이 기술은 에도 막부 말기, 이노우에 오덴(1788~1869)에 의해서 고안되었다고 하고 1956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시카쓰리짜기는 위탁 또는 수탁작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관사업의 양재봉공 수입액은 8,348円이었으며 위탁업에서는 일본옷 재봉공 3,190円, 양식재봉공 100,410円, 양복세탁 6,200円이었다.

쿠루메시카쓰리짜기(久留米紺織) 공장



3) 경운

1939년 경운에 취업한 연인원은 관사업에 19,871명, 위탁업에 100명이었으며 경운의 작업 수지는 관사업 6,796円, 위탁업 8,970円이었다. 안동지소 경운작업장에는 축산작업이 운영되었다. 당시 전국 형무소에서 실시한 축산교육이 매우 효과가 있어 인천, 개성, 안동, 김천 등 네 곳 형무소에서 각 30마리의 면양을 길러 그 성적이 매우 좋고 털의 품질이 좋아 1938

경운(한국전쟁 이후)



모내기(한국전쟁 이후)



년에는 각 기관에 20두를 증가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였다.⁷⁾ 경운지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로 재해를 여러 번 입기도 하였다.⁸⁾

4) 그 밖의 작업

1939년 고공(藁工)⁹⁾작업 연인원은 1,562명이었으며 수입고는 403円이었다. 고공작업은 벗짚을 이용하여 가마니 짜기, 멍석 짜기, 새끼 등을 만드는 작업으로 해방후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으나 나일론 등을 이용한 가마니, 노끈 등의 보급으로 사라졌다. 토공(土工)작업의 연인원은 5,901.5(관사업 3,438명, 위탁업 2,463.5명)명이 취업하였고 관사업에 연탄공 40명, 마공 20명이 취업하였다. 위탁업은 혁공 3.1명, 면타부 8.5명, 세공 70명, 이발부 52명이 취업하였다. 혁공은 가죽제품을 만드는 작업으로 1939년 작업수입액은 5,100円이었다. 마공은 삼베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1939년 작업수입액은 42円이었다.

5) 바자회 개최

안동지소에서는 매년 형무작업제품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연례행사인 안동형무지소의 바자회는 1932년 23일과 24일의 양일간 형무소내 연무장을 제1회장, 사무소를 제2회장으로 하여 개최하면서 진열품도 상당히 풍부하였고 소매물가에 비해 매우 싼 가격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당일에는 각 50관 1인당 1관을 한도로 형무소제 무, 배추 등을 매우 싸게 봉사할 예정이었다.¹⁰⁾

또한 1935년 11월 23일 개최한 안동 신유박애회(출소자보호회)가 주최한 형무소 재감인 제품 바자회 겸 염가판매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출품 총점수 1천여점, 판매금총액 6백여원, 입장인원 총수 1,500여명에 달하였다고, 안동형무소 제품판매에 호실적을 올려 판매고 6백여원을 기록하였다.¹¹⁾ 1936년 3월 24일 안동형무지소 내 신유박애회(辛酉博愛會)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형무소 앞 연무장에서 형무소제 품 바자회를 개최하였다.¹²⁾

7 1938년 10월 7일 조선일보.

8 홍수의 위력에는 형무소도 항복!(1925년 7월 23일 동아일보) / 가족 40명 탁류에 고립, 안동형무지소의 대농장은 치명적 타격(1936년 9월 6일 부산일보)

9 짚이나 풀 줄기로 엮어 만든 수공예품.

10 1932년 11월 23일 부산일보사.

11 1935년 11월 28일 매일신보.

12 1936년 3월 24일 부산일보.

7. 위생 및 의료

1908년 전국 감옥에 감옥의(監獄醫)와 약제사를 정원에 배치하였고, 1910년에는 정원확보에 노력하였다. 당시 감옥의 중에는 각 전공에 따라서 감옥위생에 관한 특수연구를 맡거나 설비와 급식개선에 기여하는 감옥의가 많았다. 주요한 예로는 공기의 함유소와 감옥건축, 재감 한국인의 생리적 특성, 구금병의 해결법, 약초재배법 같은 것이 있었다. 당시 민심과 재정상의 이유로 힘들게 한 연구를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선 치료와 청결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감옥규율을 진전시키고 모든 동작의 훈련을 철저히 하면서 재감자의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였다. 1923년 이후에는 법무국 행형과에서 감옥위생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의화학(醫化學)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경성과 서대문의 두 형무소의 의무주임에 촉탁하고 재감자의 양식, 채소 및 약초 재배, 영양 지수조사, 의료기구 기계 및 약품의 구비통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1925년 감옥의를 보건기사(주임 대우) 및 보건기 수(판임 대우)로 개칭하였지만 정원이 적은 형무소와 치과치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감자를 위해서는 치과의 의무촉탁을 배치하였다. 1937년 10월 현재 안동지소에는 보건기 수 1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주요 형무소에는 약제사가 배치되었으며 각각 처우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은 감옥 내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피부병,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과 조악한 음식 상태로 인한 치질 그리고 신경통, 정신공황 등이었다. 또한 취조 과정에서 받았던 고문으로 인한 복막염, 늑막염, 골절 등과 겨울철 동상이 많았다.

아래 표는 1939년부터 1938년까지 안동형무지소 수용자 환자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36년			1937년			1938년					
	신환자	전귀		환자 연인원	신환자	전귀		환자 연인원	신환자			
		전치	사망			전치	사망					
전염성 및 전신병	3	2	1	89	11	7 2	-	497	11	4 2	1	621
신경계 질환	5	4	-	57	3	2 1	1	36	6	4 1	-	200
혈행기 질환	1	1	-	10	1	-	-	23	1	1	-	171
호흡기 질환	5	4 1	1	209	18	16 1	1	398	5	3 1	1	56
소화기 질환	8	7 1	-	71	36	20 1	1	465	26	21 3	2	772
비뇨기 및 생식기질환	3	2	-	30	-	-	-	-	1	1	-	26
임신 및 산신질환	1	1	-	19	-	-	-	-	-	-	-	-
피부 및 운동기질환	11	10	-	110	28	26	-	471	11	10	-	151
뇌쇠	1	1	-	5	1	-	-	-	-	-	-	-
외인에 의한질환	88	7	-	236	20	14 1	-	265	12	12	-	288
기타	-	-	-	-	5	5	-	5	19	17	1	151
계	45	38 3	2	836	112	90 6	3	2,160	92	72 8	5	2,436



1938년 안동지소의 가을 재소자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³⁾

독거수용 한국인 6명의 평균신장은 166cm, 평균체중 59kg, 영양상태 양호 5명, 보통 1명이었으며 모두 정신적으로는 정상이었다. 일본인은 1명의 독거수용자가 있었으며 신장 174cm, 체중 60kg, 영양상태는 양호하였다. 혼거수용 한국인은 모두 190명으로 평균신장은 163cm, 평균체중 56kg, 영양상태는 양호 68명, 약간 양호 52명, 보통 65명, 불량 5명이 있었으며 약간의 정신이상자는 2명이 있었다. 일본인 혼거자는 2명이 있었으며 평균신장 160cm, 평균체중 57kg, 영양상태는 약간 양호 1명, 보통 1명이었다. 소년수는 만 19세가 3명이 있었으며 평균신장 156cm, 평균체중 58.5kg이었다. 18세는 1명이 있었으며 신장은 167cm, 체중은 63.5kg이었다.

13) 안동형무지소, 추계건강진단성적에 관한 건, 1938년 11월 21일(국가기록원 소장)

8. 교육과 교화

일제강점기에는 각 형무소별로 교회사와 교사 등을 배치하여 교육과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안동지소에는 교회사가 1명이 배치되었다.

교육은 「조선행형교육규정」이 제정되어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수형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국민도덕의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세 미만 수형자 중 형기 6월 이상인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령이 30세 미만 형기 1년 이상 수형자로서 학력이 보통학교 4학년 수업정도에 이르는 자 및 그 밖에 형무소장이 교육의 필요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간이보통학과의 수업연도는 2년 4학기로 하고 수신(修身), 국어, 산술 및 조선어 등 4과목을 가르치고 일본인에게는 조선어를 가르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과의 수업연한은 2년 2학기로 하였으며, 보통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정도로 하고 교과서에 따라 수신, 국어, 산술 및 직업의 4과목을 가르쳤다. 보습과의 수업연한은 1년 2학기로 하고 고등소학교 정도로 하여 교과서로 국어, 산술, 지리, 국사 및 직업의 5과목을 가르쳤다.

안동형무지소 조선행형교육개요

학급별	학기개시인원	종말고사 합격인원	불합격 인원	교육 연시간	중도 취학인원	중도 퇴학인원
제1학급	7	7	-	152	-	-
제2학급	14	12	-	152	-	2
제3학급	4	3	-	152	1	2
제4학급	4	4	-	152	2	2
계	29	26	-	608	3	6

※ 개시 1938년 4월 1일 종료 1938년 9월 30일 △은 여자



안동형무지소 조선행형교육개요

학급별	학기개시인원	종말고사합격 인원	불합격 인원	교육 연시간	중도 취학인원	중도 퇴학인원
제1학급	4	14	-	148	10	-
제2학급	10	17	-	148	9	2
제3학급	14	15	-	148	7	6
제4학급	3	4	-	148	2	-
계	31	50	-	592	28	8

※ 개시 1938년 4월 1일 종료 1938년 9월 30일 △은 여자

전국적으로는 1937년 10월 1일 평균 재감인원 19,602명에 대해 총집교회, 특별집합교회, 개인교회 등의 실시 연인원이 95,112명으로 1인당 4.9회의 교회가 실시되었다. 집합교회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회, 식장교회, 관전(棺前) 교회, 특별집합교회, 임방(臨房)교회가 있었다. 개인교회는 입소교회, 은전교회, 가출옥교회, 출소교회, 기일교회, 조상교회, 수상(受償) 교회, 징벌교회, 청원교회, 임방교회, 통신교회, 사형자교회, 서신교회, 접견교회, 이감교회 등 16종이 실시되었다.

안동형무지소 교회 등 시행회수 및 연인원 조사(1938년)

종별	횟수	자리수	수형자	기타	계
총집교회	32	32	5,673	156	5,829
특별집합교회	37	39	4,366	111	4,477
개별교회	-	-	976	27	1,003
접견	-	-	112	76	188
편지	-	-	1,763	537	2,300



9. 안동형무지소 해방의 기록¹⁴⁾

가. 해방당시 안동형무지소의 실상

안동지소는 원 대구형무소 분감이었지만 소년수의 급증에 따라 김천소년형무소의 분감으로 재출발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성인수는 모두 본감으로 이송하였다. 별도로 안동법원지소의 미결수도 구금하였기 때문에 종전 당일 수용인원은 소년수형자 290명, 피의자 소년 30명, 피의자 청년 2명이 있었다. 이 소년피의자는 전원 공립안동농림학교의 생도로서 종전 직전 치안유지법 위반자였다. 수형자의 죄질은 총동원법 위반, 특히 징용법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었고 그 외에 절도범을 주축으로 폭행·상해 등이 약간 점증하는 추세였다.

구금규모는 본소에 424명, 농장 외박에 120명이었다. 직원 중에는 교회사 이외 직원 중 이미 4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또한 소집 중 6, 7명이 만주 등 전쟁터로 갔기 때문에 직원의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다.

주식물인 곡류의 재고량은 256일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부식물 중 채소류는 자급하여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둔하던 부대와 일반 민간에도 나누어 주어 감사를 받을 정도였지만 이에 반해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였다. 한때 신입 소년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시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전해져서 곤혹스러웠지만 일본인 위생부장이 조사한 결과 당초 의사가 한



¹⁴⁾ 이 내용은 일본교정협회가 발간하는 『형정(刑政, 우리나라 교정誌에 해당) 1975년 6월호(통권 86권 6호)에 실린 내용이다. 1985년 해방 당일부터 안동지소장이 안동지소를 떠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역사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행형운영이 법령에 근거하였다는 사실과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가 실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행형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이다.

국인이었기 때문에 시중의 한국인 의사가 라이벌 의식의 비방을 훌렸다는 것으로 판명되어 관계자들이 안도하였다. 그렇더라도 이 일은 신입자의 체질저하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쿠라하라(倉原) 지소장은 해남도(海南島)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고, 농장에서 각종 동물류를 사육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식탁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유감이었다고 탄식하였다. 또한 약품 입수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초채취반을 편성하여 민간요법까지 시험하는 등 열의가 넘치는 응급책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전해진다.

작업은 대농장(낙동강 반변 44정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신축도 있지만 출역 인원은 거의 경운부 80명에서 130명, 지魯공 20명에서 30명, 죽세공 20명에서 30명, 양재 봉공 10명에서 15명, 관용부 30명에서 40명, 휴역 기타 60명에서 80명이었다. 또한, 취업 비와 세입예산의 안배로 세출은 특별작업비(농작, 축산 등) 17,000円, 보통작업비(목공 기타) 8,500円이었으며, 수입은 특별작업 40,000円, 보통작업 15,000円이었다. 농장에 특수한 하나의 풍경으로 명물 양수차가 있었다. 이것은 모리(森) 대구소장이 오사카(大阪)형무소 시찰시 토산품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풍차에 의한 양수탑이다. 그 당시 경상북도 지사는 ‘이 것은 조선의 가난한 농민에게 주는 큰 복음이다.’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 종전시에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큰기계에 의한 양수설비에 착수하였다.

교회사는 응소하여 전사하였고, 후임자도 또한 소집되었다고 하는 불운이 이어졌다. 그 사이에 다카시마(高島) 교무주임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소장도 또한 자주 교장에 나타나서 시국해설을 하기도 하였다. 교육·교회의 효과는 가출옥자의 증가에 나타는 것이 관계가 있겠지만 우량한 소년은 보국대에 뽑혀졌기 때문에 적격자가 감소하고 있었으며 아쉬움이 많았다.

나. 종전처리

8월 15일 정오에 일왕(日王) 항복발표 시에는 재소자는 전원 그 자리에서 경청하도록 명령이 있었다. 내근직원은 지소장실에 모여 탄식하였다. 일본계 관리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인 사이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아니하였다. 매월 15일 저녁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날이었지만, 대체하여 전 직원이 무도장에 집합한 가운데 지소장은 다음과 같이 시달하고 일동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첫째, 항복선언은 내려졌다. 머지않아 한국과 일본은 웃깃을 분리해야 하지만 오늘까지의 협력을 감사한다. 둘째, 여행에 나서는 새는 흔적을 태운다고 하는 속담을 참고로 서로 웃는 얼굴로 이별하자. 언젠가 양국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에는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자.

셋째, 조선인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가 있다. 그 추진력으로 훌륭한 성적을 올려주기를 바란다. 넷째, 소 내와 농장에 있는 모든 관용재산은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신정부에 인계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표한다. 다섯째, 차모임이 이별의 모임이 된 것은 서로 예상하지 아니한 것이었다.“여기서 건배사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말하고 폐회하였지만 이 결과의 영광은 당시로서 시일과 함께 전 조선에서 제일로 상을 추천받을 만하다.’

다음날 16일 오전 9시, 농장외박 출역자를 교회당에 집합시키고 항복선언을 해설한 후, 모든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어떤 지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경계망동을 하지 말고 여러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에 종사하도록 훈시하였다. 재감자는 이미 소문이라도 들어서였던가, 일동은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였다. 해방지령은 3일째에 도착하였다. 지령은 ‘첫째 일정한 자격, 조건(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70명) 아래 즉시 석방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다른 지령이 있을 때까지 유치하라. 둘째 사상범은 소재지의 유력자에게 인도하라. 셋째 석방 시 한꺼번에 다수를 해방하여 치안을 어지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 해방 실황을 기술하면 석방은 오전과 오후 2회로 하고 한 번의 인원을 15명 내지 20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귀주지의 멀고 가까움, 환승 등의 관계를 감안하여 한 사람 당 백미 2.3 되, 동전 5円을 지급하고 한국인 직원이 안동역까지 데리고 가는 보호를 하였다. 해방된 소년은 돌아가는 마음이 화살과 같았고, 희색이 만면에 가득하였으며 명랑하였고 이별사를 남기고 떠나갔다. 잔류수감자 74명 중 30명 정도는 소 내에 머무르게 하여 취사, 청소, 농작물 손질 등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잔류수감자 중 결국 관리 살해, 도주 등의 모의를 시작하는 자가 나왔다. 차석 도도경(都道慶) 간수장은 지소장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전원을 해방시켰다.



10. 결어

안동형무지소에서 실시된 가장 특색 있는 작업은 낙동강 지류인 반변천 북쪽에 위치한 광대한 농장작업장이 해방 이후까지 수용자의 노동력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농장에 출역한 수용자의 숫자는 100명을 넘었고, 외박작업장이 설치하고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쌀농사와 그 밖의 야채 등 재배작업에 종사하였다.

본문에서 기술되어 있는 안동형무지소 자료에서도 갑오경장 이후 일제강점기에 걸쳐 의식주, 작업, 교화, 누진처우제도, 가출옥 등 개혁적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교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와 보건의료는 물론 규율과 질서유지, 작업과 교육 등 다양한 처우는 국가형사사법운영 체제의 구성부분으로 자리잡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교도소는 100여년 이상 동안 안동지역에서 중요한 기관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사법체계 상뿐만 아니라 안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안동교도소의 역사는 교정의 역사임은 물론, 안동의 역사이자 문화였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은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자 문화였던 각 교정기관의 이야기를 시민과 국가중요정책결정권자, 국회의원 등 정치가, 오피니언리더, 연구가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가기록원,『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III: 법원·형무소 편』, 2010년
- 대구형무소 연혁, 1938년
- 서운재 역, 일제강점기 조선행성이야기, (주)교도소연구소, 2023년 3월
- 안동교도소, 안동교도소100년(안동교도소사), 2021년 6월
- 조선총독부 법무국 朝鮮治形協會 / 금용명 역,『조선형무소사진첩』, 2020년
- 조선총독부 법무국 朝鮮治形協會,『朝鮮の行刑制度』, 1938년 2월 20일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상)

- 교류분석이론을 근거하여 -

한도완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워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3장 TA 분노조절프로그램

제4장 연구방법

제5장 연구결과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제언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분노조절의 어려움으로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 경험이 있는 20대 수용자를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 소재 P구치소의 심리치료팀의 추천으로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규율위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2021년 3월 12일~3월 29일 까지 매회기 당 1시간씩 3주 동안 실시하였다.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검증을 활용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과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Wilcoxon-Ranks 검증과 Mann-Whitney U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집단 내 사전-사후 평균점수와 차이검증에서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자기통제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두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의 차이에서는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논의를 통하여 규율위반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하여 법 개정과 외부 심리관련 전문가의 채용이 요구되고 또한 여러 심리치료 이론을 접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교류분석, 규율위반수용자,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개인이 사법절차에 의해서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일은 인생에서 하나의 큰 충격일 것이다. 수용자는 성장배경이나 성격 및 행동이 제각각이고 다양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어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수용하여 평등한 처우를 하는 것은 어렵다(윤옥경, 2011). 수용자의 심리특징은 자기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어 순간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교정본부, 2002). 그리고 수용자는 수용질서를 저해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규칙이나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양기숙, 2007).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규율 위반에 관련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공격성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 중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이다(정종진, 1991). 수용자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송태호, 1995). 그들은 쉽게 흥분하며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충동조절방식에도 문제를 지닌다(안현석, 2001). 자기통제력은 인지나 정서, 행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세윤, 최서윤, 김범수, 2007). 수용자는 수용생활에 대한 공포 혹은 불안감으로 인해 신경증적 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기 중심적 편견으로 흥분, 공격 등 자기통제력을 잃게 되어 행위나 사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심리적 특징이 있다(최낙균, 2007). 끝으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cherbaum, Cohen-Charash & Kern, 2006) 혹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고 관련된 장애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chwarzer & Jerusalem, 1995)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용자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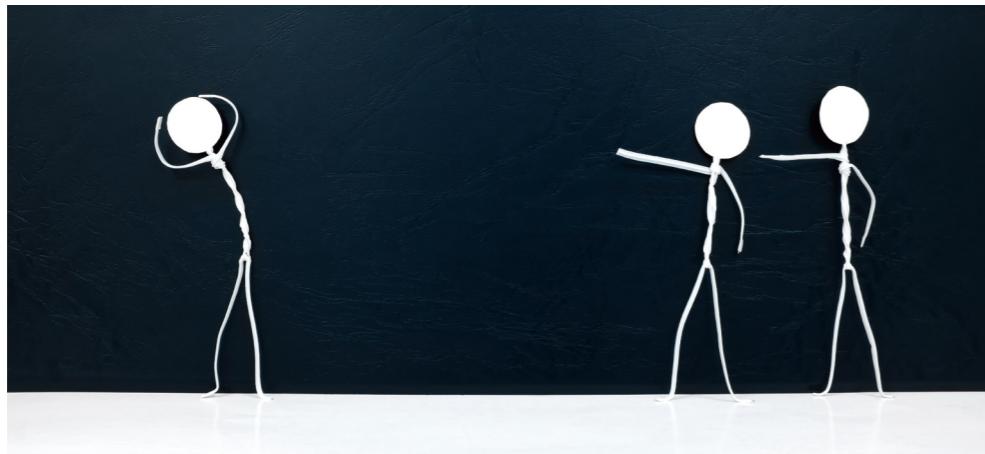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욕구 및 정서조절 능력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최옥채, 2007). 교정시설 내 생활에 대한 부적응 역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심리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기존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심리치료센터'로 통합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초기상담, 위기상담, 심층상담 등 각종 전문상담 및 인성교육, 생활지도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심리적인 중재를 통한 수용자의 심리적 결함과 부적응의 원인을 탐색하고 변화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주로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먼저 대상 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연구가 아동이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 대다수가 인지행동접근을 통하여 자기주장훈련, 정서적 훈련,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 등 개입 방안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용자의 분노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배경으로 수용생활 부적응과 같은 특정한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몇몇의 단일 연구 이외에는 아직 국내에서 교류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아주 미비한 상태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탈행위를 줄이고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자존감이 향상, 유지되고 자발성과 자율성 및 자각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생산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욕구를 충족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확장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전의 병리심리학을 탈피하고 긍정심리학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교류분석이 인간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pper R., 2009). 에릭 번(Eric Berne)에 의해 개발된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이하 TA)은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한 접근방법으로 타인과 가지는 의사소통방식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자기개념, 생활각본, 태도 등에 대한 분석 및 재획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Stewart and Vann, 1987). 교류분석을 적용한 문제해결 영역으로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생활자세, 자아상태, 각본변화, 자기이해, 가정폭력, 영성발달, 자활태도, 사회기능향상, 자살예방, 트라우마,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조정미, 김장희 최경희, 2018; 김진숙, 2016; 김미례, 2015; 김은주, 2013; 김민호, 아영아, 2011; 김미현, 김민호, 이영호, 2009; 김태준, 2005; 이지명, 김인규, 2007; 김인규, 김종호 2008; 이동자, 이효신, 2010; 제석봉, 2010). 특히 자아상태 활성화는 생활적응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례, 2008). 교류분석은 누구나 긍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과 재결정을 통해 변화가

능성을 강조한다(김미례, 2017). 또한 자기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박영희, 2012). 교류분석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자아상태는 기능별로 비판적인 어버이자아상태(CP), 양육적인 어버이자아상태(NP), 어른자아상태(A), 자유로운 어린이자아상태(FC), 순응하는 어린이자아상태(AC)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수용자들은 이 다섯 가지 자아상태의 기능별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적응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분노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TA분노조절프로그램은 자신의 자아상태를 이해하고 교류패턴 분석을 통해 분노조절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다(손선미, 2012). 교류분석의 주요개념 중 하나로서 교류패턴 분석은 자신의 자아상태와 타인의 자아상태가 서로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서윤주, 2016). 인간관계는 바로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또는 성장하거나 악화되기도 한다(Berne, 1964). 특히 상호 간에 심리적 갈등이 없는 상보교류는 격려, 칭찬, 지지 등의 스트로크 의미를 자각하고, 무조건적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며 인간관계의 개선이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종호, 2009). 공격성과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은 자아상태와 교류패턴, 인생각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심리적 결함으로 인하여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에게 교류분석의 주요이론인 자아상태, 교류패턴, 인생각본을 통하여 내적 분노에 대한 통제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분노 상황을 관리 및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시켜주는 중재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교류분석이론에 주목하고 이 이론을 중심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심리, 정서 기능을 촉진하는데 효과성이 있는지 실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분노조절에 대한 교류분석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규율위반수용자의 분노조절을 통한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와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분석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규율위반수용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교류분석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규율위반수용자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교류분석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규율위반수용자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교류분석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규율위반수용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규율위반수용자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형사 관계법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정시설에도 수용자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령이 있다. 수용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규율위반은 교정시설 내에서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일탈행동이며, 징벌은 수용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교정처우상의 불이익 처분이다(정운선, 2009).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동은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규율위반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형 집행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규율위반수용자는 수용자의 심리적 요인 및 교정시설이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감 되어 있으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징벌을 집행한 전력이 있는 만 20대 수용자로 정의 한다.

제2절 수용자의 공격성

1. 공격성의 개념과 구성

공격성(aggression)이라는 용어는 학자별로도 다양하게 공격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격성이란 개인이나 사물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기해행위를 의미한다 (박은희, 2010). 공격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격성이란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 즉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공격성으로 볼 수 있다(Buss, 1961). 공격성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의도적인 해를 가하려는 목적지향적인 반응이며 다른 사람을 지배 또는 통제하려는 욕구에 의한 행동이다(Berkowitz, 1993; 김유진, 2006). Bandura(1973)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하고 공격적이라 판단되는 행동을 사회적 판단이나 문화적 기준을 고려해서 정의하였다. Aronson(1980)은 공격자의 의도 까지 고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거나 신체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목적을 지닌 내재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공격성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단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공격 의도나 행동결과,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개념과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이은아, 2011; 최애나, 2007; 윤현경, 2017). 상술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격성은 타인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파괴하기 위하여 실행하거나 시도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욕구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한편 Buss와 Perry(1992)는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Physical Aggression), 언어적 공격성 (verbal Aggression),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



며, 이 중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적이거나 혹은 운동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양기숙, 2007).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준비성을 나타내며 행동의 정서적 요소를 나타낸다. 적대감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이며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부당하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Buss와 Perry는 공격성의 성격적 특질은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공격성 질문지(AQ: 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공격성의 4가지 하위 요인(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측정하였다.

2. 수용자의 공격성

인간의 사회적 행동 중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공격행동을 들 수 있다(정종진, 1991). 범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성 및 충동성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 행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응철, 1999). 수용자는 자기주장이나 요구가 많고 감정표출이 직접적이어서 교정시설 내에서도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정갑섭, 1996; 홍성열, 2000). 공격성이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향할 경우 폭행이나 강도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심응철, 1999).

수용자의 공격적 성향은 대인관계 및 수용생활에 영향을 미쳐 규율위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징벌에 대한 경험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정공무원과 법에 대한 불신 및 피해의식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수용자는 특히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규율위반수용자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수용자의 충동성

1. 충동성의 개념과 구성

충동성은 위험이나 불이익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단 및 조절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격차원의 결함과 미래 상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계획능력의 결여로

정의된다(박현숙, 2013). 즉 충동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며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적고 즉각적이고 선정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고영삼, 2012). Barratt(1983)은 충동성을 인지적 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성으로 하위요인을 분류하고 있는데 인지적 충동성은 외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속도가 빠른 것을 말하고, 운동 충동성은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성이며, 무계획성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예견능력이 부족을 말한다(양기숙, 2007).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통제력 조절 미숙으로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심응철, 1999). 충동성이 높은 수용자는 나태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일반 사람들보다 자립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송태호, 2003). 경제적 ·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빈곤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은 한탕주의식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충동적으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최낙균, 2007). 또한 자신의 폭력행위가 교정시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둔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송태호, 2003). 수용자가 충동적인 성향이 높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징벌 대상자에 대한 강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심리 정서적 접근을 기반으로한 체계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rratt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Barratt 충동성 질문지(Barratt Impulsiveness Scale ; BIS)를 사용하여 충동성의 3가지 하위요인(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을 측정하였다.

2. 수용자와 충동성

수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사소한 실패에도 절망과 분노를 드러내며 공격적, 충동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최낙균, 2007).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무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된 반응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성격 특성은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천성문, 1999). 충동성은 반사회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들을 예상함에 있어서 충동성 통제 부족으로 인하여 비행행동이나 범죄를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심응철, 1999).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충동성을 가지고 있다(이경숙, 2013). 수용자의 충동성에 기인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는 범죄와 같은 일탈 행위와 대인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범죄백서에 의하면 충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과실 및 우발범, 격정범, 기회범 등)가 전체범죄의 12%이다(법무연수원, 1996). 또한 강력

범죄에 있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강도, 살인과 같은 사건은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충동성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약 2/3를 차지했다(법무연수원, 1996; 황재한, 1999). 위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충동성은 일탈행동의 직접적인 원동력이며 사회방어를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심리 정서적 요인이다. 위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충동성으로 인한 징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한 징벌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관점의 전환과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제4절 수용자의 자기통제

1. 자기통제력의 개념과 구성

자기통제(self-control)의 개념은 여러 관점에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로서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조절하거나 수행능력을 저하시켜 즉각적인 만족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김남성, 1995). 그리고 자신의 충동을 절제하고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이나 감정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이경님, 2000).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인지나 정서, 행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세윤, 최서윤, 김범수, 2007). 이러한 자기통제의 과정은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 행동의 형태를 수정하거나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한호성, 2007). Gottfredson과 T. Hirshi(1990)가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는 충동성, 위험추구성,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 4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동성(impulsivity)은 즉각적인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자



극에 반응하고 구체적인 ‘현시점(here and now)’ 성향을 갖는 경향을 말하고, 위험추구(risk seeking)란 주의하기보다는 모험을 즐기는 경향으로, 자기중심성(self-centered)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일수록 타인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화 기질(Temper)은 “좌절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용인하고, 육체적 수단보다는 언어를 통해 갈등에 응답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등 인생에서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김진희, 2012).

상술한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기통제력은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하거나 순간적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은 수용자의 문제행동과 재범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수용자와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타인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좌절을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통제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부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성훈, 정혜원, 2011). 수용자는 내재된 폭력에 대한 충동 조절과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박종구, 2017). 물리적 징벌위주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징벌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심리이론을 접종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5절 수용자의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구성

현대 심리학의 이론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개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과정에 의해 매개되는 행동수정에 관한 이론에서 출발하여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했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7)가 만든 개념으로 인간을 내부의 힘이나 외부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하는 자기조절체계를

갖춘 존재로 보고, 이러한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 연구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판단과 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고(박영신, 김의철, 200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거나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자신에게 수행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자세라고 정의하였다(김정진, 박경규, 2008). 그리고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신념 혹은 기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김아영, 2010). 이러한 정의들은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기능들을 통합하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 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증진된 자신감은 다른 상황에 접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금혜령, 2013; 김아영, 2010).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세가지로 구성된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라는 점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 또는 주관적 확신의 정도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신감은 능력뿐 아니라 가치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떠한 목표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이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처할 상황에 대한 선택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에 대해서는 피하지만,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재일, 2000; 박수미, 201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과제나 특정 목표를 수행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말할 수 있다.



2. 수용자와 자기효능감

많은 경우 범죄자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열등감을 가진다(최옥채, 2007). 아울러 수용생활에 대한 부적응 이유 또한 이러한 성격적·환경적 이유로 인해 사회에 부적응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김영회, 2005).

수용자는 자기소개, 시간의 구조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점 발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게 되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최혜숙, 2006)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정시설 수용자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 대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이들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절 교류분석

1. 교류분석

1950년대 중반 에릭 번(Eric Berne, 1957)에 의해 개발된 교류분석은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효과적인 이론으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서혜석, 2013; 서혜석 등, 2014; 우재현, 2015). 교류분석은 누구나 긍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과 재결정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김미례, 2017). 또한 자기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면서 상호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박영희, 2012).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목적은 개인의 세 가지 자아들이 자유롭게 기능하고 작용하게 하여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자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11). 즉, 교류분석의 단계를 거치면서 각 집단원들이 목표나 자신의 인생태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 상태 구조를 검토하도록 돋는 구조분석, 그리고 개인의 생활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 각본분석을 통해 각 분석의 정도와 예상되는 결과를 인식함으로 교류분석 집단상담의 목표를 더 잘 이뤄질 수 있게 한다(이장호 외, 2011).

교류분석을 적용한 문제해결 영역으로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생활자세, 자아상태, 각본변화, 자기이해, 가정폭력, 영성발달, 자활태도, 사회기능향상, 자살예방, 트라우마,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스트로크 및 자아상태 활성화는 생활적응 및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미례, 2008).

위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결과들은 교류분석이론에 대한 효과성을 밝힘으로써 교류분석이 수용자의 심리적 결함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며 교정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류분석이론의 중심내용인 이고그램(Egogram)을 통한 자아상태와 구조분석, 교류패턴, 인생각본,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분출하지 못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완화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 자아상태(P-A-C)

자아상태(ego state)란 사고와 감정, 그리고 일련의 행동양식을 통합하여 특정한 시기나 상황에서 성격의 하나로 드러나는 방법이며, 교류분석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어린이 자아 C(Child ego-state), 어른 자아 A(Adult ego-state), 어버이 자아 P(Parent ego-state)의 세 가지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상태 모델을 이용하여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이라 하였다(우재현, 1995). 구조분석에 의하면 개인은 주어진 환경 및 상황에 따라 특정한 자아상태의 방식에 맞도록 반응하며 잘 적응된 사람은 세 가지 자아상태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도록 자아 상태의 조절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아상태의 기능에 따라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진다.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기능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악 판단의 미발달로 인해 비행으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비판적 어버이자아(CP)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배형미, 이형실, 2002).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와 순응적인 어린이자아(AC)가 기능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부적응과 비행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적으로 자신의 욕



구를 강하게 표출하거나, 내부적으로 문제를 숨김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규수, 류태보, 1996). 특히 도덕이나 규범을 중시하지 않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수용자는 자아상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규율위반 행동은 하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김윤주, 2011). 그러므로 수용자는 자아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아기능을 활성화시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2) 의사교류분석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교류라는 것이 발생 한다. 교류(transaction)란 인간의 의사소통 단위 혹은 두 사람의 자아 상태들 간 자극-반응의 연결로 정의되며(Stewart & Joins, 1987; 제석봉, 최외선, 김갑숙, 윤대영 역, 2010), 이러한 교류를 분석하는 것을 교류분석이라고 한다. 교류분석은 두 사람이 교류할 때 어떤 자아 상태가 주로 기능하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하여 인간관계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교류할 때 자극과 반응을 어떻게 주고받는가에 따라 상보적 교류, 교차적 교류, 이면적 교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제석봉, 최외선, 2006). 상보적 교류(complementary transaction)는 자극을 보낼 때 상대방에게서 기대하는 자아 상태에 맞는 반응이 나오면 발생한다. 즉 상대방에게서 전달된 자아상태와 여기에 반응하는 자아상태가 일치할 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교류방식은 예상할 수 있는 정서적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편안한 대화가 계속된다. 교차적 교류(crossed transaction)는 자극을 보낸 자아상태와 기대하는 자아상태가 맞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발생한다. 즉 수신된 자아상태와 반응하는 자아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교류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대화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면적 교류(ulterior transaction)는 이중적 메시지가 상호 전달되는 교류로서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메시지와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심리적 수준의 메시지를 말한다. 즉 상대방의 두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하여 잠재적 교류와 현재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의미한다.

(3) 이고그램(Egogram)

Dusay(1977)는 자아상태의 기능에 대한 각 개인이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양을 도표로 나타내는 직관적 방법으로 이고그램을 고안하였다. 이고그램이란 인간이 표현하는 언어, 음성, 표정, 몸짓, 태도, 자세와 행동이 기능별로 다섯 가지 자아(NP, CP, A, AC, FC)로 표현된다고 보고, 이것을 분류하여 발생빈도나 에너지의 표출을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성격(Personality)을 나타내는 것이다(최형선, 2017). 이러한 이고그램 연구는 다양한 연령별 분야별로 연구되고 있다. 수용자들은 이고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고그램을 이상적인 이고그램

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박원모, 2007). 따라서 이고그램은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이 자아상태를 이해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원조한다면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생활자세가 강화되어 교정시설 내에서 적응적인 삶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을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자아가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아개념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자기효능감이 증진하였다는 서윤주(2015)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4) 각본분석

각본은 어릴 때부터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인생 계획이다. 각본분석이란 사람을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특별한 인생 드라마에 대한 분석이다(한진원, 2011). 각본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정당화되어 자기인생의 최상의 대안으로 확정된 인생계획이다(우재현, 1995). 교류분석에서는 인생을 한편의 연극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극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출하고 있는 역할을 인생각본이라 부르고 있다(박지수, 2013). 교류분석은 현재의 결단을 통해 과거의 각본에 의해 연장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각본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수용자들은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인생각본의 재결단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서윤주, 2015).

(5) 인생태도

인생태도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에게서 지각되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의미한다(송희자, 2010).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



하여 정당성을 평생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교류분석에서 인생태도(life position)는 인생초기 5~6세경까지의 경험을 통해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로부터 받은 스트로크의 질과 양에 따라 형성되는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생활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제석봉 외, 2016). 인생태도는 성장 후 성격의 일부를 형성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이나 반응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인생태도에 따라 자기와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인식, 감정, 대인관계 교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인생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손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자율성 및 인생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교류분석이 자율성과 인생태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이은미, 2000), 중학생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자아상태와 인생태도(생활자세)가 일치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공격성이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조현분, 2007).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류분석 집단상담이 인생태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저소득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취적인 인생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민은성, 2012).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인생태도에 대한 깨달음은 자율성을 향상시켜 상황에 맞는 감정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용생활에서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아상태와 인생태도(생활자세)가 일치할수록 진취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어 자기효능감 향상과 공격성이 감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정적인 인생태도는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류분석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생활자세로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6) 스트로크(Stroke)

스트로크(Stroke)란 Claude Steiner(1971)가 창안한 개념으로서 상호간 주고받는 주의(attention)로 정의되며,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평생 지속되는 인정자극이다(공근순, 2010). 교류분석에서 스트로크를 쓰다듬기와 칭찬으로 사용하며 접촉, 관계, 사회적인지, 친밀감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스트로크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 스트로크는 상대방의 감정을 기분 좋게 해주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며, 부정적 스트로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고 미워하는 표정과 말투,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걱정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제석봉 외, 2010). 스트로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로크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고(조윤미, 2003), 빈곤아동의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 연구(정안순, 2008), 성인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이 고객추천에 미치는 영향(배미현, 2012), 어머니의 스트로크가 유아 또래 간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이선자, 2014), 학교

부적응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향상에 끼치는 영향(성수나, 이영호, 2015) 등 다양한 대상과 변인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류분석의 중심내용인 스트로크(Stroke)를 통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수용이 인간의 긍정성 함양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스스로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효능감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조병금, 2008)인 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빈번히 겪게 되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긍정 스트로크를 많이 교류함으로써 인정자극으로 인해 자기긍정 타인긍정으로 행복감을 높여주고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어 원활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7) 시간구조화

인간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혼자 있거나 또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시간구조화라 한다(Berne, 1996).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은 소일, 활동, 폐쇄, 의례, 게임, 친밀의 여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시간의 구조화 방식은 스트로크 및 자아 상태와 관련되며 폐쇄에서 친밀로 내려갈수록 교환되는 스트로크의 강도가 높아진다. 폐쇄란 몸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단지 자신과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것이다. 의례란 사람들과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과 같이 친숙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타인의 반응이 예측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정형화된 스트로크 교환 방식임. 소일이란 의례와 같은 방식이지만, 좀 더 자유롭게 정형화되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활동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어떤 결실을 획득하기 위해 에너지를 투입한다. 게임이란 대화 종료 후 언제나 불쾌한 감정



즉 분노, 우울, 죄책감을 경험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반복하는 스트로크 교환방식이다. 주로 부정적인 자아 상태에서 이면교류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친밀이란 솔직한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심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이 일치를 이루는 감정의 표현이다. 친밀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신과 타인 양자 모두에 대해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TA 프로그램에서의 시간구조화 활동은 수용자의 시간 사용에 대한 분석과 재구조화를 통하여 수용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류분석은 다양한 개념이 집합적으로 모여 하나의 이론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아상태, 의사교류분석, 이고그램, 각본분석, 인생태도, 스트로크, 시간의 구조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분노를 구성할 것이다.

제3장 TA 분노조절프로그램

제1절 TA 분노조절프로그램

분노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정서반응이다(Gaylin, 1984). 분노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기본적인 정서반응으로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일차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된다(박경희, 2009). 분노 조절은 분노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이며, 상대방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면서 분노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송지은, 황순택, 전미주, 2009).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분노조절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부모(김현주, 2008; 김유정, 2007), 중·고등학생(문은주, 2011), 우울집단(안진희, 2012), 정신장애인(김혜민, 2013)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5편이었다(김수임·박민지, 2020). 이철호와 이민규(2007)는 통합적 접근에 입각하여 수용자 분노와 자아존중감 연구, 유철민(2002)은 분노조절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성 연구와 박경택(2001)의 통합적 접근 방식에 입각한 수용자 공격성 연구, 전수길(1989)의 현실요법을 적용하여 수용자의 자아개념 변화 연구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지, 정서, 행동의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하였고 교류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경환(2013)의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자기효능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노조절프로그램에 교류분석을 적용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일탈행위로 인하여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들의 공격성과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개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일탈행위로 인하여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용자는 불우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는 형기동안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 제한된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 수용자는 구금의 충격과 수용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분노조절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아기능을 활성화하여 공격성과 충동성을 감소하며 자기통제력과 자기효능감을 증진 및 유지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교정기관 내 규율위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TA이론에 토대를 두는 분노조절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수용자 자신의 분노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정미선(2014)의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본 연구의 1회기, 2회기, 3회기, 8회기를 구안하는데 참조하여 자아기능을 분석하고자 Ego-Ok gram을 활용하였다.

둘째, 수용자 상호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김다윤(2019)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4회기, 5회기, 7회기를 구완하는데 참조하여 교류패턴과 나 전달법(I-message), 스크로크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수용자의 자기통제력 및 자기효능감이 향상을 위하여 김다윤(2019)의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와 최경환(2013)의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자기효능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본 연구의 6회기와 7회기를 구완하는데 참조하여 수용자 스스로가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You're ok)’라는 인생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의 구조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분노표현)과 패턴을 확인하여 시간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과 조절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타인과 일상을 공유해야하는 구금 생활에서 교정시설 내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대화기술, 긍정적 강화, 공감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노의 감정경험에 대한 발표와 일상생활에서 분노의 감정을 제어한 사례에 대한 집단원들 간의 경험 공유를 통하여 정서적 체험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경험과 집단원의 구성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규율위반수용자의 특성에 맞도록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은 교류 분석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심리치료팀장 3년 경력의 박사과정에 있는 직원 1인과 인지행 동이론을 적용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공격성에 대한 효과성 연구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분류심사과에서 심리검사업무 경력 3년의 직원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제3절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수용생활 부적응 수용자들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목적은 일탈행위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신의 자아상태의 점검하며,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수용생활에서 지난날의 반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찾아내도록 도움으로써 수용자 상호간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구금생활 중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데 있다. 위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타인과 일상생활의 공유 속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둘째, 수용자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활성화시킨다. 셋째,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분노표현)과 패턴을 확인하여 시간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과 조절능력을 키워 자기효능감을 함양하도록 한다. 넷째, 유사한 문제로 징벌을 받은 수용자 상호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여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환기하도록 돋는다. 다섯째, 수용자 상호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돋는다. 여섯째, 구금에 대한 충격에 대하여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력을 높인다.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요내용은 <표1>에 제시되었다.

제4절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내 법적으로 보장된 일과활동(운동, 접견, 전화사용, 변호인 접견 등)과 재판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을 가야하는 구치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3회 월요일과 수요일 및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회기 60분 8회기로 구성되었다. 집단 활동은 구치소 심리치료팀 내 집단상담실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만일의 폭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구치소 내 기동순찰팀원(CRPT)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구치소 내에서 심리치료팀장 3년 경력의 박사과정에 있는 직원과 분류심사과에서 심리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진행(co-leader)을 함께 하였다.

첫 회기에는 구치소 소장과 심리치료 팀장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격려를 하였고 마지막 회기에는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수용자에게 구치소 소장이 수료증과 간단한 선물(양말)을 증정하였고 교육우수자 1명에게 표창장 및 그린카드(1회에 한하여 가족과의 전화통화권)를 수여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 명단과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로 대구지방교정청에 보고되었다.

<표1> 교류분석에 기초한 분노조절프로그램

회기	주제	개입목표	주요내용	주요 TA이론
1	안녕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참여 동기 향상 집단규칙 준수 및 준수 서약서 작성 내면의 욕구와 사회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나의 욕구가 사회의 규칙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집단규칙 준수 훈련을 통하여 공격성과 충동성을 중화시키고 이는 자기통제와 자기효능감과 관련됨 프로그램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별칭짓기 서약서 및 사전검사(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 별칭으로 자기소개하기 	
2	자아상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상태의 이해 각 자아상태의 장, 단점 ego-gram 검사를 통한 자아상태 이해 - 수용자는 대체로 CP와 FC가 높고, A와 AC 낮아서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 있음을 깨닫고 공격성과 충동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 자아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ego-gram 검사 실시 자아상태와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 확인 ‘자아상태 행동적진단표’작성, 자아상태의 기능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자아상태 직관도표’를 통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아상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자아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한 내면의 분노감정에 대한 소감 나누기 	• 자아상태

회기	주제	개입목표	주요내용	주요 TAI이론
3	자아상태와 일탈행위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k-gram 검사를 통하여 교정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인생태도와 자아상태에 대한 이해하기 일탈행위 방지를 위하여 활성화되어야 할 자아상태는 무엇인가? - CP와 FC를 낮추고, A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를 위하여 어른자아 확대를 위한 기법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회기의 요약 및 정리 직관 ego-gram 작성하기 ego-ok그램의 분석으로 자신의 자아상태를 확인하여 집단원들과 대화나누기 앞서 체크한 ego-okgram 비교, 분석 후 느낌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상태
4	긍정적 인생태도를 통한 인생각본의 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각본의 분석 - 수용자가 가지는 부모명령과 금지명령을 확인하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자기긍정-타인긍정(I'm ok-You're ok)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CP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금지명령과 충동적인 드라이버를 '셀프허가'를 통하여 자아상태(CP)를 활성화시켜 자신의 분노에 대하여 억제된 감정을 이해시키고 자아기능을 향상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회기의 요약 및 정리 '인생각본'에 대한 이해 '각본분석 질문지'작성 '각본분석 질문지'의 내용으로 '각본매트릭스'를 분석하면서 프로그램, 부모명령, 금지명령 및 '허가'를 이해하고 CP를 기능적으로 활성화하여 분노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기 자신의 교류패턴을 알아차리고 분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통제방안을 탐색해보기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셀프허가'를 주어 자아상태를 기능적으로 활성화 자신이 고거에 분노통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분노조절과 자기통제에 대한 재결정 기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각본 의사교류 패턴
5	스트로크의 이해와 긍정적 스트로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인 인정자극(스트로크)과 부정적인 인정자극(스트로크)의 반응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정자극이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분노표출의 감정을 낮추고 NP를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결정하고 분노 상황에 대한 자기통제력에 대한 재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로크의 유형 설명 분노표출과 긍정적인 인정자극(스트로크)의 관계에 대한 이해 스트로크 사전점검표 작성 - 개인별 스트로크 교환방식에 대한 이해 타인에게 주로 사용하는 인정자극(스트로크)에 대한 경험 공유 NP기능을 활성화를 위해 부정적 스트로크 거부와 긍정적 인정자극을 대화 시 적극적 활용 훈련 긍정적인 자아상을 재결정하여 분노표출을 낮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로크

회기	주제	개입목표	주요내용	주요 TAI이론
6	시간의 재결정과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의 구조화(폐쇄, 의식, 활동, 잡담, 심리게임, 친밀)'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의 구조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분노표현)과 패턴을 확인한다 AC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시간의 구조화'를 재결정하고 긍정적인 선택(자기효능감)과 조절 능력(자기통제력)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회기의 요약 및 정리 '시간구조화(폐쇄, 의식, 활동, 잡담, 심리게임, 친밀)'에 대한 설명 '나의 시간구조화'작성 후 각자 '시간구조화'양상 확인 자신의 '시간구조화'작성을 통하여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활패턴을 알아차리고 시간활용에 대한 자기통제감 갖기 AC기능의 활성화 '시간구조화'를 재결정하여 승자각본을 위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기통제감 키우기
7	인생태도 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인생태도를 알아차리고 '자기긍정, 타인긍정'의 OK인생태도로 재결정한다 OK인생태도를 위해 긍정적인 인정자극에 대한 교환을 통하여 상호존중의 감정을 느끼면서 FC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자기효능감 증진한다 갈등상황에서 I'm Ok-You're Ok로 변화를 위한 'I-message(나 전달법)'기법을 숙달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회기 요약 및 정리 네 가지 인생태도에 대한 설명 '인생태도 사전점검표'작성으로 현재 자신의 인생태도를 알아차리기 집단원 서로의 장점을 찾아 인정자극(스트로크) 표현하기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인정자극(스트로크)에 대한 상호교환의 경험 나누기 OK인생태도로 재결정하여 분노의 감정을 '나 전달법(I-message)'으로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받으면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킨다. 다른 집단원에 대한 장점을 'you're OK 롤링페이퍼'에 작성하고 느낌나누기
8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 자신의 재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역할 이해 분노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해결노력의 상호격려와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면서 자기효능감 가지기 프로그램 종료 후 변화된 나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맹세하면서 자기통제감을 키운다 프로그램 종결하고 종결감정을 구성원들과 나누면서 공격성과 충동성을 중화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회기의 요약 및 정리 사후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시하기(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에 대한 마무리와 변화된 자신에 대하여 앞으로 실생활에서 실천에 대한 약속 받기 전체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에 대한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작성 종결감정을 다루기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II.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관련 이론적 배경

III.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문제점

IV.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관련 개선 방향

V. 결론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주제어 : 교도소, 사회적 처우, 수형자, 재범억제, 수형자 인권

I. 서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14일 자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1인당 2m² 미만인 공간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¹⁾ 이 판결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판결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29일 자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 주요 판시 내용은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이다. 참조 근거법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제6조 제2항(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 등이다.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야하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고 판시한 점을 든다면 매우 당연한 법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 교정본부는 과밀수용의 원인을 가석방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님비주의(Nimbyism)로 교정시설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고, 노역 수용률이 높은 것이 그 이유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교정본부, 2021). 교정본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 실태분석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작 교정당국은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를 통해 수형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정당국은 현행 형집행법령상 귀휴제, 가족만남의 집(시간)이나 중간처우시설 이용 등의 사회적 처우 방식을 제대로 교정처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교정본부, 2022: 151-159). 수형자를 교정하고, 사회복귀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과 역할은 일정 부분 교정당국의 책무이며, 현행법상 부여된 처우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역시 교정당국의 의무라는 점에서 교정당국의 사회적 처우 정책은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교정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관련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처우의 개념과 근거

형집행법 제55조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처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5항은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처우라는 용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하여 사회적 처우란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처우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예규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다(법무부예규 제1193호). 이 지침은 제9절에서 사회적 처우로 일반귀휴(제29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제31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제32조), 중간처우시설 이용(제33조) 및 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제34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각의 처우방법에 따라 적용 대상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비등급별 사회적 처우기준은 이 지침 제5조의 [별표 1]에서 확인된다.

〈표1〉 수형자의 등급별 사회적 처우 유형

구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일반귀휴	허가 (연중 20일)	허가 (연중 10일 내외)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사회견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봉사활동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날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가족만남의 집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종교 행사 참석	허가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외부연극, 문화공연 관람	필요시 허가	필요시 허가	특히 필요시 허가	불허

* 자료 :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별표 1.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전체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처우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현황은 〈표2〉와 같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은 평균 10.6%, 완화경비처우급은 34.7%이며, 이들이 사회적 처우의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2〉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현황

구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	제외·유예
2015	33,244 (100%)	3,233 (9.7%)	11,163 (33.6%)	15,366 (46.2%)	2,705 (8.1%)	777 (2.3%)
2016	34,776 (100%)	3,363 (9.7%)	12,164 (35.0%)	15,642 (45.0%)	2,765 (8.0%)	842 (2.4%)
2017	34,622 (100%)	3,619 (10.5%)	11,923 (34.4%)	15,569 (45.0%)	2,770 (8.0%)	741 (2.1%)
2018	32,263 (100%)	3,600 (11.2%)	11,316 (35.1%)	14,237 (44.1%)	2,650 (8.2%)	460 (1.4%)
2019	33,242 (100%)	3,968 (11.9%)	11,736 (35.3%)	14,159 (42.6%)	2,789 (8.4%)	590 (1.8%)
2020	33,701 (100%)	4,258 (12.6%)	11,833 (35.1%)	13,877 (41.2%)	2,845 (8.4%)	888 (2.6%)
2021	33,381 (100%)	3,977 (11.9%)	11,751 (35.2%)	13,000 (38.9%)	2,871 (8.6%)	1,782 (5.3%)

* 자료 : 교정본부, 2022, 72, 재구성.

2. 사회적 처우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우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처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억지력에의 영향 여부나 수형기간 긍정적 인식 변화, 가족과의 유대감 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신치재(2009)의 연구, 박영규의 연구(2007) 박영숙의 연구(2011) 및 이동임의 연구(2018) 등은 교정당국이 귀휴 수형자의 도주나 범죄행위 등을 우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횟수나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처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수형자의 불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조윤오(2012)의 연구는 사회적 처우의 재범 억지력에 초점을 두었는데 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등을 경험한 출소자의 복역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낮은 사실을 검증하였다. 한편 민수홍의 연구(2018)는 수형자의 가족애착과 교도소에서의 가족접촉 정도가 이들이 구금 이후에 느낀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버지로서의 애착이 강할수록 편지나 면회 등 가족접촉 기회를 늘리려 하

고, 출소 이후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연희의 연구(2011)는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 등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이어진 신연희(2015)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가족접견은 수용자의 가족기능과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자 가족기능이 긍정적일수록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수용자의 가족접촉을 활발하게 하면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국외에서도 나타난다. 수형자와 가족의 빈번한 접촉은 수형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유대는 수용기간 및 출소 후에도 매우 강력한 통제작용을 함으로써 범죄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owen, Stansfield, & Boman, 2019). 심지어 수용자가 가족면회시 입회하는 교도관이 덜 권위적일수록 가족유대감은 더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Johnson, 2020). 나아가 수용 기간 중 자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출소 후 자녀와의 유대감이 강하고,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양육책임을 더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les, Muentner, & Kjellstrand, 2019). 한편 수형자의 교도소 면회와 수형자의 귀휴로 가족을 방문한 횟수가 많을수록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Mitchell, Spooner, Jia, & Zhang, 2016)도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유대이론적 관점에서 수형자와 가족간의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Cochran, Barnes, Mears, & Bales, 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처우의 재범억지효과, 가족유대감, 수용자의 스트레스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수형자들이 충분하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적 처우 실태를 교정본부의 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²⁾

²⁾ 2019년까지로 분석대상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정당국의 시설내외처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III.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문제점

1. 귀휴제

교정본부는 귀휴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는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귀가를 허가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

형집행법 제77조(귀휴)는 귀휴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장은 이들이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②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예외적으로 귀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도 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어 동법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3항은 동법 규정 외 귀휴의 사유로 다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표3〉 예외적 귀휴 사유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소장은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경비처우급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개방처우급은 1년 중 20일 이내, 완화경비처우급은 1년 중 10일 내외, 일반경비처우급은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하며, 중경비처우급은 불허한다.

〈표4〉 전체 수형자 중 귀휴 수형자의 비중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수형자	32,473	33,651	34,949	34,300	33,813
귀휴자	999	1,084	1,142	1,198	1,193
귀휴비(%)	3.1	3.2	3.3	3.5	3.5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1, 재구성.

지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전체 수형자 중 귀휴 수형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은 전년도와 같은 비중으로 귀휴 수형자의 비중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 기간 전체 수형자 중 귀휴가 허용된 경우는 평균 3.3%에 불과하다. 형기별 귀휴자의 비중을 보더라도 3년 미만 형기의 수형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3년 미만 수형자들의 비중이 평균 60.0%에 달하였다. 6년 미만 수형자들의 비중은 평균 21.5%에 달하였다. 따라서 6년 미만의 수형자들의 평균은 81.5%로 대부분 6년 미만의 수형자들이 귀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5〉 귀휴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

구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999 (100%)	572 (57.3%)	218 (21.8%)	57 (5.7%)	85 (8.5%)	58 (5.8%)	9 (0.9%)
2016	1,084 (100%)	666 (61.4%)	196 (18.1%)	64 (5.9%)	85 (7.8%)	71 (6.5%)	2 (0.2%)
2017	1,142 (100%)	686 (60.0%)	245 (21.5%)	92 (8.1%)	67 (5.9%)	49 (4.3%)	3 (0.2%)
2018	1,198 (100%)	754 (62.9%)	252 (21.0%)	64 (5.3%)	69 (5.8%)	50 (4.2%)	9 (0.8%)
2019	1,193 (100%)	694 (58.2%)	301 (25.2%)	89 (7.5%)	65 (5.4%)	38 (3.2%)	6 (0.5%)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2, 재구성.

이와 같은 실태는 사회처우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귀휴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귀휴 대상자 중 단 1건의 귀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정본부, 2022: 121). 즉, 귀휴대상 수용자들이 매우 착실하게 귀휴조건을 지킨 것이다. 이는 귀휴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치재(2009)의 연구, 박영규의 연구(2007) 박영숙의 연구(2011) 및 이동임의 연구(2018) 등을 통하여서도 지적되었다. 이 연구들은 교정당국이 귀휴 수형자의 도주나 범죄행위 등을 우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횟수나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처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수형자의 불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윤오(2012)가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등을 경험한 출소자의 복역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귀휴조건과 선정절차, 귀휴기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귀휴 요건 중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나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등의 사유는 다른 어떤 요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귀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가족만남의 시간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만남의 시간에 대해서는 동시행규칙 제89조 및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제3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그리고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



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가족이란 수형자의 가족을 말하나,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가족만남의 날 행사 및 가족만남의 집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한다. 일반경비처우급은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에 한하며, 중경비처우급은 불허한다.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한 수형자 비중은 2015년 39.3%에서 2016년 42.8%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11.1% 감소한 31.7%이고, 2018년에는 전년도 보다 5.8% 감소한 25.9%, 2019년에는 0.7% 증가한 26.6%이다.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한 수형자 비중은 평균 33.3%이다.

〈표6〉 가족만남의 날 참여 수형자 비중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수형자	32,473	33,651	34,949	34,300	33,813
참가 인원	12,755	14,393	11,095	8,891	9,004
참가비(%)	39.3	42.8	31.7	25.9	26.6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4, 재구성.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한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은 〈표7〉과 같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평균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42.9%가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27.5%, 6년 이상 10년 미만 10.3%, 10년 이상 15년 미만 6.8%, 15년 이상 5.1%, 무기형 7.5%로 나타났다.

〈표7〉 가족만남의 날 참여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

구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2,755 (100%)	4,830 (37.9%)	3,801 (29.8%)	1,377 (10.8%)	967 (7.6%)	744 (5.8%)	1,036 (8.1%)
2016	14,393 (100%)	5,642 (39.2%)	4,172 (29.0%)	1,514 (10.5%)	1,023 (7.1%)	851 (5.9%)	1,191 (8.3%)
2017	11,095 (100%)	4,528 (40.8%)	3,264 (29.4%)	1,129 (10.2%)	705 (6.4%)	592 (5.3%)	877 (7.9%)
2018	8,891 (100%)	3,246 (36.5%)	2,711 (30.5%)	1,023 (11.5%)	633 (7.1%)	531 (6.0%)	747 (8.4%)
2019	9,004 (100%)	3,454 (38.4%)	2,644 (29.4%)	1,065 (11.8%)	669 (7.4%)	510 (5.7%)	662 (7.4%)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5, 재구성.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가족만남의 날 행사의 수형자의 참여인원이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2016년 42.8%의 참여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그 허용 폭을 격감

시킨 이유 등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 이후 2016년의 참여허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15년 미만 6.8%, 15년 이상 5.1%, 무기형 7.5%로 나타나 무기형의 참여허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들 10년 이상 수형자들 보다 높다는 점이다.

한편 2015년 이후 가족만남의 집 행사의 참여허용 현황은 <표8>과 <표9>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8> 가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수형자	32,473	33,651	34,949	34,300	33,813
참가 인원	1,361	1,431	1,583	1,913	1,908
참가비(%)	4.2%	4.3%	4.5%	5.6%	5.6%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5, 재구성.

가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18년까지 느슨한 증가추세를 보여 5.6%에 달하였고, 2019년까지 이어졌다. 전체 수형자 중 가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평균 비중은 4.84%이다.

가족만남의 집에 참여한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을 분석하면 대체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미만 수형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평균 참여 비중을 살펴보면 33.4%가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30.9%, 6년 이상 10년 미만 11.3%, 10년 이상 15년 미만 6.5%, 15년 이상 6.3%, 무기형 11.7%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다 수형기간이 긴 15년 이상 및 무기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참여 시간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형의 비중이 전체 6년 미만 형기 수형자 다음으로 높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무기형이나 장기형 수형자 보다 흥악성이나 범수가 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만남의 집 행사에의 참여허용율이 무기형 보다 적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표9> 가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형기별 현황

구분	계	3년 미만	6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61 (100%)	452 (33.2%)	412 (30.3%)	168 (12.3%)	94 (6.9%)	100 (7.3%)	135 (9.9%)
2016	1,431 (100%)	485 (33.9%)	439 (30.7%)	154 (10.8%)	90 (6.3%)	106 (7.4%)	157 (11.0%)
2017	1,583 (100%)	536 (33.9%)	467 (29.5%)	183 (11.6%)	99 (6.3%)	108 (6.8%)	190 (12.0%)
2018	1,913 (100%)	650 (34.0%)	580 (30.3%)	225 (11.8%)	130 (6.8%)	97 (5.1%)	231 (12.1%)
2019	1,908 (100%)	628 (32.9%)	632 (33.1%)	175 (9.2%)	118 (6.2%)	98 (5.1%)	257 (13.5%)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5, 재구성.

교정본부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 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정본부, 2022: 7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이 무색하게 개방처우급 및 일반경비처우급에 비해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행사를 통한 가족과의 교류가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수홍의 연구(2018)는 수형자의 가족애착과 교도소에서의 가족접촉 정도가 이들이 구금 이후에 느낀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버지로서의 애착이 강할수록 편지나 면회 등 가족접촉 기회를 늘리려 하고, 출소 이후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만남이 잊을수록 수용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수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영실, 신연희의 연구(2009)나 가족과의 접촉이 수용자의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신연희의 연구(2015) 등에서 이미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있다.

한편 신연희의 연구(2011)는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도관의 문책 우려를 들고 있다. 즉, 교도관의 입장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입장에서 징계 등의 위험이 있어 가족접견 대상자 선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연희(2015)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가족접견은 수용자의 가족기능과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용자 가족기능이 긍정적일수록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수용자의 가족접촉을 활발하게 하면 수용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코로나 19 감염질환 이전부터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을 통한

가족접촉을 현격하게 제한하는 교정처우의 방향이 매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용자의 가족관계를 해체시킬 우려를 더욱 높이는 것이며, 수용자의 출소 후 재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교정본부는 수형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사회 견학 및 봉사활동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교정본부, 2022: 158).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2조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자를 가석방 신청 수형자,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3조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견학이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성적 우수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 공로가 있는 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기능자격 취득자로서 그 기능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합한 경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 연극·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및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다. 한편 수형자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독거 노인·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이·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 및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의 현황은 <표10>과 같다.

<표10>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수형자	32,473	33,651	34,949	34,300	33,813
참가 인원	4,322	4,991	5,080	4,850	4,859
참가비(%)	13.3%	14.8%	14.5%	14.1%	14.4%

* 자료 : 교정본부, 2022, 159, 재구성.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는 2015년 4,322명 13.3%에서 2014년 4,991명 14.8%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여 2019년 4,859명 14.4%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의 참여 비중은 다른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 같이 전체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 및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평균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수형자 중 45.9%에 달한다. 이들 중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중은 평균 14.2%에 불과하다. 이는 참여 가능 대상자 중 30.9% 정도만이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정당국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이에 선정되지 못한 수형자의 불만을 일으키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김선태, 2016).

4. 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

수형자는 허가를 받아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하여 외부 종교행사 참석 또는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의 참석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45조는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종교행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의 [별표1]은 내부종교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외부종교행사 참여 대상으로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허가대상으로, 일반경비처우급은 특히 필요시허가대상으로, 중경비처우급은 불허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³⁾은 교정시설 내의 종교거실지정 및 출소자의 종교시설 보호의뢰 등의 규정을 두었다.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형자 중 기독교 32.4%, 불교 21.9%, 천주교 12.1%, 무종교 31.4%, 기타 2.2% 등으로 나타났다(교정본부, 2022: 113). 그런데 교정

³ 법무부예규 제1288호, 2022. 2. 3., 일부개정, 2022.1. 시행. 제4장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에서 지원 제27조(성상의 크기), 제28조(성상 및 성물 관리 등), 제29조(종교거실 지정), 제30조(생활지원), 제31조(가족관계등록), 제32조(출소자 보호의뢰), 제33조(상담기록) 등을 규정하였다.

본부는 수형자의 외부종교행사 등의 참여 현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활동은 종교교정위원⁴⁾의 소속 종교별로 이루어지나 교외의 경우 처우등급별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행사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종교활동 역시 상주 종교인(전임종교인)이 없어 수형자의 종교활동에 한계가 있고, 수형자의 교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유병철, 2011; 윤종우, 2020; 김영식, 2018; 허경미, 2012).

5. 중간처우시설 이용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규정된 중간처우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간처우 시설은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망센터 등으로 명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개방시설)은 2009년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이, 2009년 안양·춘천·창원·순천·청주여자교도소에 소망의 집이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밖의 중간처우시설은 2013년부터 밀양구치소와 2016년부터 천안개방교도소에 관리하는 희망센터가 각각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설 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①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②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③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따른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설 내 개방시설의 수용 처우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처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처우시설의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앞서 사회적 처우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⁵⁾

IV.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관련 개선 방향

1.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념 및 유형의 명확한 규정 필요

현행 형집행법은 사회적 처우에 대하여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처우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형집행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처우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별정의 및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법 제57조(처우) 제5항에서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정도이다.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도 사회적 처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사회적 처우) 제1항에서는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등”을 사회적 처우로 간접적으로 개념 정의한 것이다.

법무부 예규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및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회적 처우의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사회적 처우의 유형을 일반귀휴(제29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제31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제32조), 중간처우 시설 이용(제33조) 및 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제34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처우를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제52조-제56조), 귀휴(제57조-제58조)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개념 및 처우 종류, 처우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 안정성 및 미래예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 교정처우를 확대하여 수형자의 출소 후 재활 의지를 복돋우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더욱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념 및 처우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집행법에 사회적 처우의 개념과 처우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위임하는 등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⁴⁾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 제2항은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협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⁵⁾ 보다 세세한 실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9977203)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교정본부로부터 2022년 11월 3일자로 “중간처우시설별 입퇴원 현황 및 현원은 공개될 경우 특정 교정시설 간 중간처우 운영 비교 등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중간처우시설별 프로그램 실시 현황 역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석방 후 취업알선 등 연계현황, 시설수용자의 규율 및 제재 현황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 받았다.

2. 사회적 처우 관련 별도의 법무부 행정지침 필요

<표11>과 같이 사회적 처우라는 용어는 형집행법 시행지침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고, 그 개념 정의는 법무부 예규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유형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집행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시설에서는 매번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과 다양한 업무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는 실제로 김선태(2016), 박영규(2007) 및 박영숙(2011)의 연구에서도 일부 지적된 것이기도 하다. 즉 귀휴제도의 경우만을 예로 들더라도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및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중복적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처우의 개념과 유형을 형집행법령에 명시한 뒤 별도로 가칭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지침을 법무부 행정지침(예규 또는 훈령)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지침에 교정시설의 사회적 처우의 유형에 따른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므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형집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표11> 사회적 처우 관련 규정

구분	규정 내용
형집행법	• 제57조 처우(귀휴, 봉사활동 및 사회견학), 제77조 귀휴, 제78조 귀휴의 취소
형집행법 시행령	• 제97조 귀휴
형집행법 시행규칙	• 제92조 사회적 처우(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제93조 중간처우, 제129조 귀휴허가-제143조 귀휴 조건위반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제3장 수형자의 처우 • 제9절 사회적 처우 • 제29조 일반귀휴, 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제32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33조 중간처우 시설 이용, 제34조 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 • 제4장 중간처우 • 제39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제40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 제41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제42조 운영지원 작업자 선정 및 이송, 제43조 선정 취소사유, 제44조 선정취소, 제45조 수용 및 이송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제11조-제15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제15조의2-제20조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등 • 제3장 중간처우 • 제27조-제51조, 중간처우의 기본원칙 등, 제4장 사회적 처우 • 제52조-제56조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제57조-제58조 귀휴사유확인 등

3.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의 실시 필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처우의 대상은 귀휴의 경우에만 형집행법 제77조에 6개월 이상 형을 집행 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별표1)에 구체적으로 수형자의 등급별 사회적 처우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처우 실시 현황은 2015년 이후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전체 수형자 중 평균적으로 귀휴 3.3%, 가족만남의 시간 33.3%, 가족만남의 집 4.8%,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14.2%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은 평균 10.6%, 완화경비처우급은 34.7%로 45.3%이며, 이들이 사회적 처우의 기본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중 사회적 처우를 받은 것은 매우 미미하다. 즉 귀휴 7.3%, 가족만남의 시간 73.5%, 가족만남의 집 10.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31.3%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정 수치보다 더 적은 개방처우급 및 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들이 사회적 처우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집행법령 및 법무부 예규 등의 규정대로 사회적 처우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치재의 연구(2009), 박영규의 연구(2007), 박영숙의 연구(2011) 및 이동임의 연구(2018) 등의 지적과 같이 귀휴 수형자의 도주우려나 사고를 염려하여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귀휴 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수형자는 단 1명으로 나타났다(교정본부, 2022: 120). 즉, 교정당국이 지나치게 사회적 처우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고, 시설내 처우에 급급한 교정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돋고, 가족관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도소장급 직원을 포함한 일반 교도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소자들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일상적인 교정처우를 하는 소극적인 처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4. 인권적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 7월 14일 자로 판결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7다 266771)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 어려움 등으로 과밀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판결은 법무부의 논리가 더 이상 과밀수용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밀수용의 문제를 시설환경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문제 즉 기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판결의 요지는 첫째,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그런데 과밀 수용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단기간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 것이며, 셋째,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취지는 사회적 처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형집행법에 귀휴, 봉사활동 및 사회견학을, 시행령에 귀휴를, 시행규칙에서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및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등을 교정시설 밖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별도로 귀휴의 허가 및 취소에 이르기까지 규정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처우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 및 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들이 계호인력 부족이나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귀휴, 가족과의 만남의 날이나 가족과의 만남의 집 행사 등에 참여할 기회를 장기간 차단당하는 경우 일상적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장기간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형집행법 제4조(인권존중), 국가배상법 제2조 이외에도 형집행법 제5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들어 수형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사회적 처우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춘 수형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처우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사회적 처우 중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 등의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확보와 허가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의 만남이 찾을수록 수용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수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영실, 신연희의 연구(2009)나 가족과의 접촉이 수용자의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신연희의 연구(2015) 등에서 이미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교정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는 출소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돋고, 가족과의 유대가 이어져 가족 해체를 방지하며, 나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처우의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현재 한국의 교정당국의 사회적 처우 실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수형자 중 귀휴가 허용된 경우는 평균 3.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시행되고 있다. 둘째,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한 수형자의 평균은 33.3%로 나타났다. 2016년 42.8%의 참여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그 허용이 줄어들어 2016년 26.65%까지 감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전체 수형자 중 가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평균 비중은 4.84%이다. 가



족만남의 집 참여 수형자의 비중은 낮지만 가족만남의 날 보다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아 가족만남의 날 보다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만남의 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넷째, 무기형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승인받은 비중이 형기가 낮은 6년 이상 수형자들의 비중 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는 허가대상 수형자 선정 기준의 적합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처우가 가능한 개방처우급 및 완화경비급 처우 수형자 중 사회경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평균 30.9%에 불과하여 사회화 교육 참여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섯째, 외부종교행사 등 참여는 공식적 통계 제시가 없을 정도로 참여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정본부는 사회적 처우가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실적을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그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처우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처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정하게 선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과 집행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교정본부, (2021),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2021. 6. 9. 보도자료.
- 교정본부, (2022), 2022 교정통계연보, 2022.
- 김선태, (2016),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26(4), 203-232.
- 김영식, (2018), 캐나다의 교도소 수용자 위기기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제도에 대한 고찰,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Counseling 3(2), pp.5-22.
- 민수홍, (2018),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수형자의 가족관계: 가족접견, 서신교환, 구금 후 가족관계 변화, 교정연구 28(2), pp.131-157.
- 박영규, (2007), 수형자 귀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37, pp.33-56.

- 박영숙, (2011),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23), pp.111-143.
- 신연희, (2011),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교정 담론 5(2), pp.111-146.
- 신연희, (2015), 가족기능이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접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 담론 9(3), pp.279-305.
- 신치재, (2009), 수형자의 귀휴제도에 관한 고찰 - 개정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형사법 연구 21(1), pp.469-490.
- 전영실/신연희, (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45, pp.279-303.
- 조윤오, (2012), 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교정연구 57, pp.7-30.
- 안성훈, (2017),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27(1), pp.55-93.
- 유병철, (2011), 교정시설 수용자 교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기여, 교정연구 53, pp.7-49.
- 윤종우, (2020), 교정시설 내 상주(常住) 종교위원 도입 고찰, 교정복지연구 (66), pp.23-68.
- 이동임, (2018), 스마트 폰과 GPS를 이용한 귀휴, 화상상담·의료·접견 활성화를 위한 실천 가능성 검토, 교정연구 28(1), pp.139-165.
- 허경미, (2012), 미국의 종교교정의 실태 및 도입모델 연구, 경찰학논총 7(1), pp.185-209.

[국외 문헌]

- Charles, P., Muentner, L., & Kjellstrand, J., (2019), Parenting and incarceration: Perspectives on father-child involvement during reentry from prison, Social Service Review, 93(2), pp.218-261.
- Cochran, J. C., Barnes, J. C., Mears, D. P., & Bales, W. D., (2020), Revisiting the effect of visitation on recidivism, Justice Quarterly, 37(2), pp.304-331.
- Hart-Johnson PhD, A. M., (2020), Prison Staff and Family Visits: United Kingdom Case Study.
- Mitchell, M. M., Spooner, K., Jia, D., & Zhang, Y., (2016), The effect of prison visitation on reentry succ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7, pp.74-83.
- Mowen, T. J., Stansfield, R., & Boman IV, J. H., (2019), Family matters: Moving beyond "if" family support matters to "why" family support matters during reentry from pris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6(4), pp.483-523.

[기타 자료]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현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현마142 결정
- 교정본부, <https://www.corrections.go.kr/>

교정행정의 혁신, 가능할까?

오경식

한국교정학회 회장,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다. 사이버, 모바일, AI 등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등이 끊임 없이 출현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이 절박한 현실이다. MZ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은 전혀 다른 사회다. 교정시설에는 현재의 변화와 무관한 과거 입소자와 최근 입소자들이 문화적 갈등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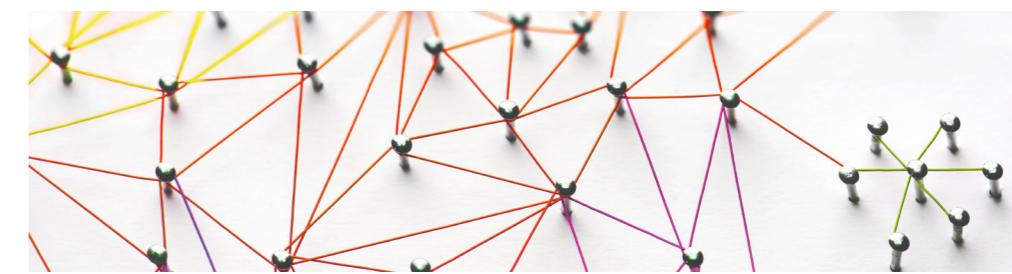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의 공간

교정시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혼재된 공간이다. 공통적인 규율이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서로 적응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반 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별개의 공간이다. 당연히 적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갈등 중 문화, 세대 간 갈등 외에도 시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즉 과밀수용, 의료갈등 등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갈등이 상존하는 열악한 공간이 교정시설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분쟁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와 함께 교정업무 관련 소송이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을 내세워 수용자들의 고소, 고발이 남발돼 최근 5년 사이에 그 건수가 2~3배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국내법을 위반해 수용자의 신분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수용자는 UN 범죄자 처우최저준칙 등에서 권고하는 처우기준에 따른 개별처우를 해야 하고, 국내 수용자와 처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와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교정행정의 개편도 필요하다. 선진 교정시설에서는 상당수의 여성 교정공무원이 일선 계호업무에 배치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수용자의 증가 등 범죄에 따른 분리 수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정형의 강화로 중형수용자의 증가로 고령수용자가 증가돼 이들에 대한 처우 또한 준비돼야 한다.



선진 교정을 위한 전제 조건

이것이 우리 교정시설의 현주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의 책무만 강조하는 일방적인 교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정인력 대비 과밀수용상태인 현재 법무부 내의 교정본부 형태로 정책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 외국의 교정시설 다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때 독립청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또한 선진 교정행정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선진화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교정교육 연구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하다. 물론 교정학회 등 관련학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과밀수용이 정부의 예산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경우 수용자 숫자를 합리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사회 내 처우가 수반된 가석방이나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구금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해 시설 내에서 선진 교정행정을 펼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은 공통된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권위를 서로 존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규율을 만드는 자나 그 규율을 따르는 자 모두 그 규율을 존중하고 이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현재 우리의 교정시설이다.

모두가 존중하는 규율은 존재할 수 없는가? 이러한 규율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최선의 교정행정의 혁신 정책이 아닌가. 그렇다면 최선의 교정행정 혁신정책을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갈등만 존재하고 존중이 없는 곳에서는 선진적인 교정업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선진적인 교정업무의 전제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첫째, 교정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고 기본이지만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범 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진 행정이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수용자를 분류해 다양한 형태의 교정기관에 수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분류 처우에도 맞지 않다. 셋째, 교정공무원에게 일정 범위의 엄격한 권한과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엄격한 질서유지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교정기관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도록 충분한 재량이 제공돼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전제가 교정행정의 혁신으로 비칠까 걱정스러운 현실이 안타깝다.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과 국가배상책임

박규연

광주지방교정청 교감

I. 들어가며

II.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 확인

III.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과 국가배상책임

IV. 결론

I. 들어가며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일반 수용자의 공동행사 참가, 텔레비전 시청, 자비 물품 구매, 전화통화, 접견, 서신수수 등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반면, 실외운동에 대하여는 "소장은 일반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수용자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처럼 수용자 실외운동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청이라 할 수 있지만, 위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수용자는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서도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1호),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2호), 우천·수사·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먼저, 수용자 실외운동과 관련하여 구 형집행법 제108조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14헌나45, 2016. 5. 26. 전원재판부)을 간략히 살펴본 후, 앞서 언급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실제 사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5052호, 같은 법원 2010나28146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 확인[2014헌마45, 2016. 5. 26., 전원재판부]

1. 결정 요지

가. 형집행법상 징벌 및 처우제한

(1) 형집행법상 징벌

형집행법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및 그 지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면서(제105조 제1항), 그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07조).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현재 2005. 2. 24. 2003헌마289; 현재 2014. 8. 28. 2012헌마623 참조).

(2) 금치 및 처우제한

징벌 중에서 금치는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 소장은 금치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위 처분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자체 없이 확인하게 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

이 사건 금치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다른 징벌, 즉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집필, 서신수수, 접견, 실외운동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실외운동 정지)에 관한 부분

(1)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반성에 전념하도록 하여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현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1)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이에 형집행법은 일반 수용자의 공동행사 참가, 텔레비전 시청, 자비 물품 구매, 전화통화, 접견, 서신수수 등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반면, 실외운동에 대하여는 “소장은 일반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제33조 제1항). 위 조항을 구체화한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수사·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와 비교할 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전화통화, 집필, 접견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일반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0.46m^2$ 크기의 창문이 떨린 $4.6m^2$ (1.397평) 크기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는데, 실외운동의 금지는 단순히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금치기간 동안 징벌거실 밖으로 나와 실외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채로 협소한 징벌거실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기간은 최장 30일로서,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징벌 중 금치의 비율은 88.1%(30일 이내 27.8%, 20일 이내 45.7%, 10일 이내 14.6%)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금치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 교통이 단절된 채 $4.6m^2$ 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는 수용자에 대하여 최장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용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을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현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참조). 형집행법은 소장으로 하여금 금치뿐만 아니라 실외운동 정지의 처우제한을 부과한 경우에도 집행 전·후 및 집행 중 수시로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는데(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4항), 이는 실외운동 정지 자체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우제한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치조항이 징벌거실 수용이라는 금치의 집행에 더하여 실외운동 정지라는 처우제한을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수용시설 안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2) 현재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 이후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동 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24050 판결 참조), 금치처분을 받은 모든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소란, 난동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다.

또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단서는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3)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수용자를 격리하는 방식의 징벌이 부과될 경우 실외활동 내지 실외운동은 다른 처우제한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고,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저기준이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다.

미국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상 징벌 중 하나인 ‘징벌적인 격리’(disciplinary segregation)를 받은 수용자는 특별수용실(Special Housing Unit)에 수용되는데, 집필·독서에 필요한 물품, 종교문헌 등을 제외한 개인물품은 압수되고, 매점 이용은 제한되며, 서신·전화통화·접견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실외운동을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5시간 동안 보장되고 있다. 다만 소장은 위 수용자의 실외운동이 교정 시설의 안전, 보안, 질서유지 또는 공공안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한번에 1주일 동안의 운동만을 제한할 수 있다(28 C.F.R. §541.21, 541.22, 541.31.).

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 중 하나인 폐거(閉居)의 경우,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는 것, 종교상 의식행사에 참가하거나 또는 다른 피수용자와 함께 종교상의 교회를 받는 것, 서적 등을 열람하는 것, 자기계약작업을 하는 것, 면회하는 것, 신서를 수발하는 것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지되는 반면(제152조 제1항), 실외운동은 그 건강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되고(제152조 제2항), 이 때 실외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수는 1주일에 1일을 밑돌지 않아야 한다(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제87조).

4)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징벌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최저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하므로, 금치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이 사건 금 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 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용시설의 안전 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 중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위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 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다.

2. 결정 의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는 수용자의 자유의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형집행법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필과 서신수수, 접견, 실외운동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금치처분 중 운동금지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에서 종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던 바 있다. 당시 구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서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를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으며,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된 형집행법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다만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헌판단을 받은 이후에 개정된 법이 종전의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다시 위헌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본 위헌 결정은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우임을 고려하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징벌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최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본 위헌 결정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실외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게 된 것이다.

III.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과 국가배상책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5052, 2010나28146호 사건의 기초사실 및 해당 판결 요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후 2008. 4. 14.부터 2010. 8. 2.까지 ○○교도소에 독거 수용되어 있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교도소장은 원고에 대하여 동절기인 2008. 10. 1.부터 2009. 5. 31.까지, 2009. 10. 1.부터 2010. 5. 31.까지 매주 일요일과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조를

짜서 차례로 실시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매주 수요일이다) 이외에 1일 1시간씩 1주일에 5일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실외운동을 하는 곳은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사동 바로 옆의 테니스코트만한 면적의 소운동장으로 원고의 사방에서 약 5m만 걸어가면 된다.

(3)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동절기에 아래와 같은 실외운동을 하였는데, 정 보화교육장과 심층상담실은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사방에서 약 70m 걸어가야 하는 곳에, 접견실은 대운동장을 지나 약 200m 걸어가는 중에, 종교집회실, 교육실은 목욕탕을 지나 약 200m 걸어가는 곳에 각 위치해 있다.

1) 정보화교육 : 2008. 9. 8.부터 2008. 12. 19.까지, 2009. 1. 19.부터 2009. 4. 21.까지, 2009. 5. 4.부터 2009. 5. 19.까지, 2009. 6. 8.부터 2009. 11. 26.까지 각 매일 14:00부터 16:00까지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

2) 원예치료(잔디인형, 오리토피어리, 숯공예 등) : 2010. 2. 16.부터 2010. 3. 16.까지 총 8회 14:00부터 15:30까지 원예치료 교육장에서 실시

3) 종교집회 : 매주 목요일 종교집회실에서 실시

4) 기타 : 월 4회 접견, 대학교수와의 심층면접 3개월에 1회씩, 그 외 공안주임, 행정계장, 교학계장 등과 그들의 사무실 또는 원고의 사방에서 면담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교도소장은 2008. 10. 1.부터 운동담당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히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하는 날에는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교도소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내지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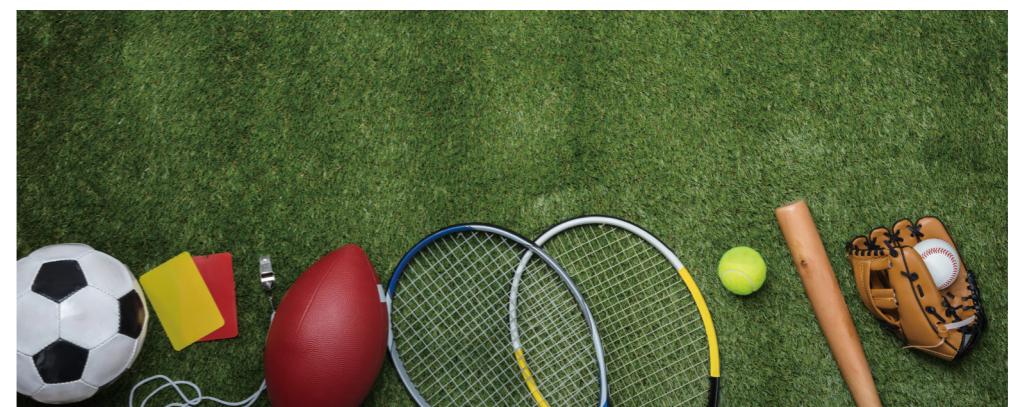
(2) 피고의 주장

○○교도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동절기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하여 관리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교도소의 인력 부족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서 정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청구에 응할 수 없었다.

다. 원심 및 항소심에서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 원고 일부승(인용금액 : 1,000,000원)

1)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1일 1시간 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한 경우는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제한한 사유는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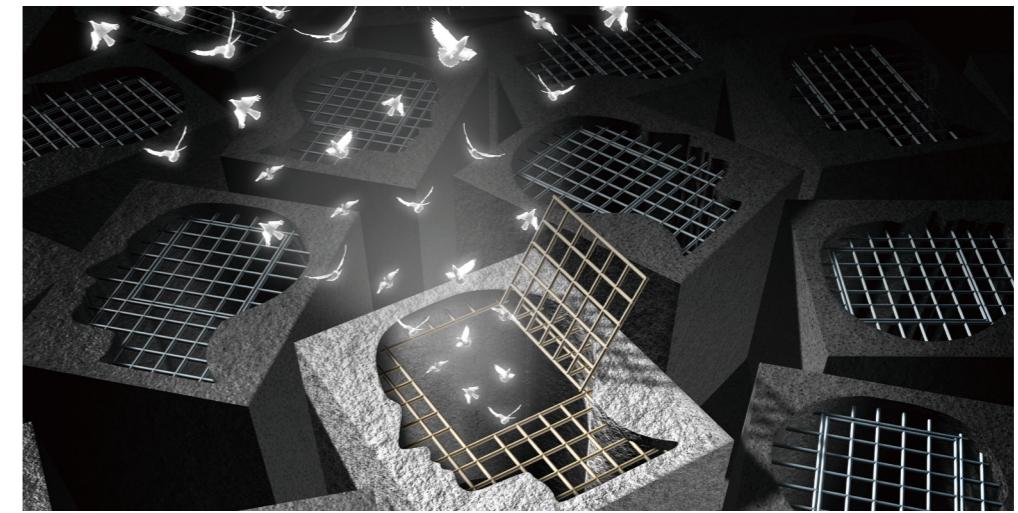
2) 피고가 주장하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이 실외운동을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운동과 목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장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작업의 특성, 수용자의 질병, 우천, 수사, 재판)은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 피고가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지침은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수용자 특히 독거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 및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교도소 측에서 이미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실외운동을 실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교도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는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항소심의 판단 : 1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

1) 관련법령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1일 1시간 내의 운동을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외운동을 제한한 경우는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은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제한한 사유는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온수목욕 실시로 인한 인력부족’이 실외운동을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운동과 목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도소장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작업의 특성, 수용자의 질병, 우천, 수사, 재판)은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는 점, 피고가 목욕실시 등으로 근무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지침은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점, 당시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의 전체 근무직원수는 경비교도대를 포함하여 약 500명에 이르는 반면 동절기에 온수목욕과 실외운동을 병행실시하기 위한 부족인원은 매일 6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직원의 재배치나 업무분장의 변경 또는 운동조 편성인원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큰 무리 없이 온수목욕과 실외운동을 병행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사방에서 소운동장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실외운동을 위하여 장거리의 호송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및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도 종전에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실외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었고, 이 사건 제1심 선고 후에는 동절기에도 온수목욕과 실외운동을 병행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는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3) 그러나 원고는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 관련 법령 역시 엄중한 형의 집행에 의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이 제한됨을 전제로 하여 그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수용자의 적극적인 복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권리를 창설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즉 위 운동 및 목욕에 관한 관련 법령은 소위 단속법규로서 국가공무원이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로 인한 수익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이를 소구할 권리가 생긴다거나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공무원이 위와 같은 단속 법규를 위반함에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국민에게 별도의 권익 침해를 가져온다면 이를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교도소장이 단순히 법령에 의한 실외운동을 주 1회 미실시했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교도소 재소 당시 동절기 상당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원고의 사방에서 약 70m 떨어진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았고, 2010. 2~3.경 약 한달 동안 총 8회에 걸쳐 매번 1시간 30분 동안 원고의 사방에서 약 200m 떨어진 교육장에서 원예치료를 받았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원고의 사방에서 약 200m 떨어진 교육집회장에서 종교 활동을 하였고, 그 외 상담, 접견 등을 하여 반드시 온수복 육과 실외운동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사방을 나와 실외 활동을 할 기회가 적지 않았던 점,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사방은 약 6평 크기의 정방형으로 방 1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신문지 전지 크기의 창문이 있고 복도 쪽에 A4 2장 정도의 창살

이 붙은 창문이 있어 자연채광과 환기가 상당히 원활하고, 사방 안에서는 규칙상 정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누워있거나 개인적인 운동 등을 하여도 교도관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원고의 행동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도소장이 온 수목욕을 한 날 원고의 실외운동을 제한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고통이나 질병을 얻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쟁점의 소재

가.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는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원심 및 항소심은 모두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한 사유는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제1조 및 제4조),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자 권리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 점, 형집행법 제33조는 소장의 재량을 부여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더 나아가 형집행법 시행령은 운동의 시간과 횟수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령 제49조는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사유로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득이한 사유를 우천, 수사, 재판 등과 이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로 한정적으로 제한 해석한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나. 단속법규와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

(1) 항소심에서의 판단

온수목욕을 실시한 날에 실외운동을 제한한 행위는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한 원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운동 및 목욕에 관한 관련 법령은 소위 '단속법규'로서 국가공무원이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로 인한 수익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이를 소구할 권리가 생긴다거나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운동관련 조항은 단속법규 중 그에 위반하여도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데 이견이 없다. 예컨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해 정해지지 않는 경우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문제되는데, 어느 것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하는 표준에 관해 일반원칙은 없고 법규정의 목적과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재판부는 이 사건 운동관련 조항은 단속법규 중 그에 위반하여도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보았다. 원고는 수용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자유형의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점, 형집행법은 신체의 자유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제한됨을 전제로 엄중한 형의 집행이라는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운동관련 조항이 엄중한 형의 집행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수용자의 적극적인 복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권리를 창설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관련 운동관련 조항을 단속법규(단속규정)로 판단한 점은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단속법규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여기서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소위 금지법규(단속법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것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강행규정에 속한다. 여기서는 위 금지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효력 여하에 따라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하며, 전자는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¹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다5806).

(3)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

항소심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단순히 법령에 의한 실외운동을 주 1회 미실시했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통상 「공해(환경오염)」이나 「생활방해」에 관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넘으면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리이다(이른바 수인한도론). 수

인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질과 그 정도이고 이밖에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가해의 계속성, 손해의 회피가능성과 가해자의 손해방지조치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있어 통상적으로 법원은 공무원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운동관련 조항은 소위 단속법규라는 전제하에 국가공무원이 위와 같은 단속 법규를 위반함에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국민에게 별도의 권리 침해를 가져와야지만 이를 국가의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유형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집행법의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단순히 법령위반행위 발생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 수인한도론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다른 사례로서, 원고 서○○ 외 1인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 13633호)에서 해당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동안 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냉난방, 채광, 통풍의 정도나 화장실의 위생상태 등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들을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²⁾하였다.



²⁾ 다만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450975)에서 취소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인용 되었고, 대법원(대법원 2017다266771)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되었다.

IV. 결론

징역형의 집행은 수형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 자유를 박탈하여 이에 정역을 가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응보를 하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수형자의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의 또 다른 목적인 수형자의 교화 및 간생을 도모하는 것과, 구금시설이 다수의 수형자를 구금하여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내부의 규율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으로부터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약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수형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수형자의 환경에 대한 권리 중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형집행법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형자는 그 법적 지위의 특성상 일반인들과는 달리 강제로 격리되어 수용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된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형집행법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수용자 실외운동 더 나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구금되어 있는 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실외운동을 안전히 실시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선진교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교도소 밀반입 실태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사례를 중심으로

곽대훈

충남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II. 교도소 밀반입 실태

III. 핸드폰 밀반입 실태 및 예방대책

IV. 맷음말

국문 요약

본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핸드폰에 대한 평균회수율은 수용자 1,000명당 약 3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용자들은 밀반입한 핸드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모의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탈출, 폭동, 폭행, 마약 등과 같은 범죄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밀반입된 핸드폰은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핸드폰은 주로 방문객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내부직원을 통해 반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방대책을 크게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주정부에는 교도소 내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일부 주정부는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법률은 직원과 방문자 또는 드론을 활용한 휴대폰 밀반입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적으로는 교정시설 내 반입된 핸드폰을 탐지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았고, 끝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육·훈련, 운영절차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정, 밀반입, 밀반입품목, 핸드폰, 사례연구, 미국



I. 들어가며

최근 국내외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교정 관련 주제 중 하나는 담배, 휴대폰, 약물 등 교도소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다양한 밀반입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각급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휴대폰을 밀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¹⁾,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을 지휘했다는 기사²⁾, 국내의 경우에는 몇 해 전 기사이긴 하지만 창원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사이에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는 고발로 담배 밀반입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기사³⁾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밀반입, 특히 핸드폰 밀반입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의 최소형 핸드폰(엄지손가락 사이즈)의 밀반입으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기기가 교정시설에 밀반입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용자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공무원, 시설 내 수용자 및 무고한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다양한 범죄 활동에 가담하기도 한다.⁴⁾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교도소 밀반입 실태

1. 반입금지품목

반입금지품목(contraband)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정시설의 안전, 보안 또는 이익에 위협이 되는 모든 재료 또는 품목을 지칭한다. 미 연방형법 (18 U.S. Code § 1791) 상 금지물품(prohibited objects)에는 총기류, 대마초를 포함한 향정성신정 의약품, 현금, 핸드폰 및 무선장치, 개인 및 교정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며 많은 주에서는 밀수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6개월에서 20년 이하의 징역형 등 다양한 법적제재가 부과된다.

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18611.html>

2)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9548

3)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0148>

4) <https://www.fcc.gov/wireless/bureau-divisions/mobility-division/contraband-wireless-devices>



2. 교도소 밀반입 실태

미국의 경우, 교도소 밀반입 실태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몇몇 자기보고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미국 교도소 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밀반입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아래 <표1>은 수용자 1,000명 당 반입금지품목별 회수율을 나타낸 표이다.⁵⁾ 무기(weapons)의 평균회수율은 수용자 1,000명당 33.61개이고 최대값은 58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휴대폰(cell phones)의 경우에는 평균회수율 30.97개, 최대 36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금지약물(controlled substances)의 경우에는 수용자 1,000명당 평균 회수율은 28.46개, 최대 296개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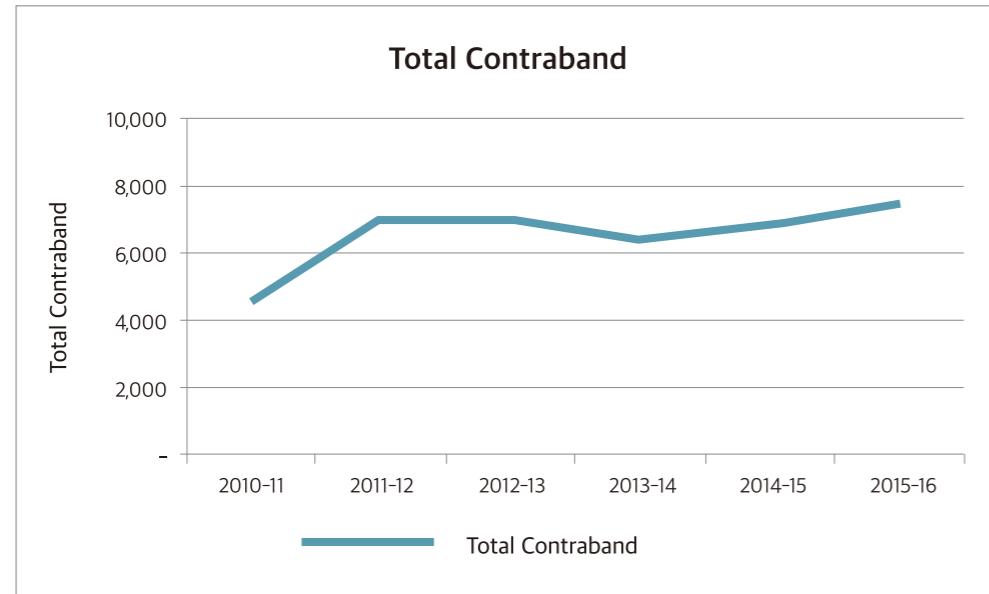
<표1> 반입금지품목 회수율

	Facilities Reporting	M	SD	Minimum	Maximum
Weapons	299	33.61	66.97	0	585
Cell phones	300	30.97	53.73	0	366
Controlled substances	299	28.46	40.05	0	296
Tobacco	299	13.03	20.61	0	150
Alcohol	299	8.07	15.93	0	117
Cash or other moneys	300	3.59	16.12	0	255
Property with gang identifiers	191	1.68	6.57	0	71
Excessive property	290	0.56	4.28	0	66
Modified or altered property	50	14.70	32.88	0	201

5) Peterson, Kizzort, Kim, & Shukla (2021) Prison Contraband: Prevalence, Impacts, and Interdiction Strategies. Corrections. <https://doi.org/10.1080/23774657.2021.1906356>

뉴질랜드의 경우, 교도소 내 밀반입금지물품에는 술, 통신 장치, 마약, 마약 도구, 문신 장비, 무기 및 기타 품목이 포함된다. 금지 품목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수용자가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배와 같은 일상적인 품목이 포함되고, 모든 교도소에서 흡연이 금지된 2011년 7 월 1일부터 담배 및 흡연 장비(예: 라이터)는 금지물품으로 간주되었다.⁶⁾ 다음 <그림1>은 뉴질랜드 교도소 밀반입품목 압수현황을 나타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뉴질랜드 내 교도소 밀반입품목 압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5-2016년은 2010-2011년에 비해 압수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1> 교도소 밀반입품목 압수현황 (뉴질랜드)



6 https://www.corrections.govt.nz/resources/statistics/contraband_in_prisons

III. 핸드폰 밀반입 실태 및 대책

1. 핸드폰 밀반입 실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금지품목 중 핸드폰은 교정당국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당 평균 31개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⁷⁾

<그림2> 최소형 핸드폰



수용자들은 <그림2>와 같은 최소형 핸드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모의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틸출, 폭동, 폭행, 마약 등과 같은 범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교정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내에서 활동하는 교도소 갱단에 연루된 수십 명의 수용자들이 살인,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밀반입한 핸드폰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⁸⁾,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정국(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s) 관할 교도소에서는 밀반입한 핸드폰 사용권 다툼으로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수용자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⁹⁾

7 Peterson, Kizzort, Kim, & Shukla (2021) Prison Contraband: Prevalence, Impacts, and Interdiction Strategies. Corrections. <https://doi.org/10.1080/23774657.2021.1906356>

8 <https://www.mercurynews.com/2019/07/03/california-prison-gang-leaders-cell-phones-reveal-secrets-that-stayed-in-the-dark-for-years/>

9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now/2018/04/18/south-carolina-prison-riot-cellphone-blocking-plan/527797002/>

이처럼 밀반입된 핸드폰은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교도소와 교도소사회 시스템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핸드폰은 주로 방문자에 의해 반입되고, 최근에는 드론을 통해서 반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휴대전화 한 대당 수백 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2. 핸드폰 밀반입 대응 및 예방대책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방대책을 크게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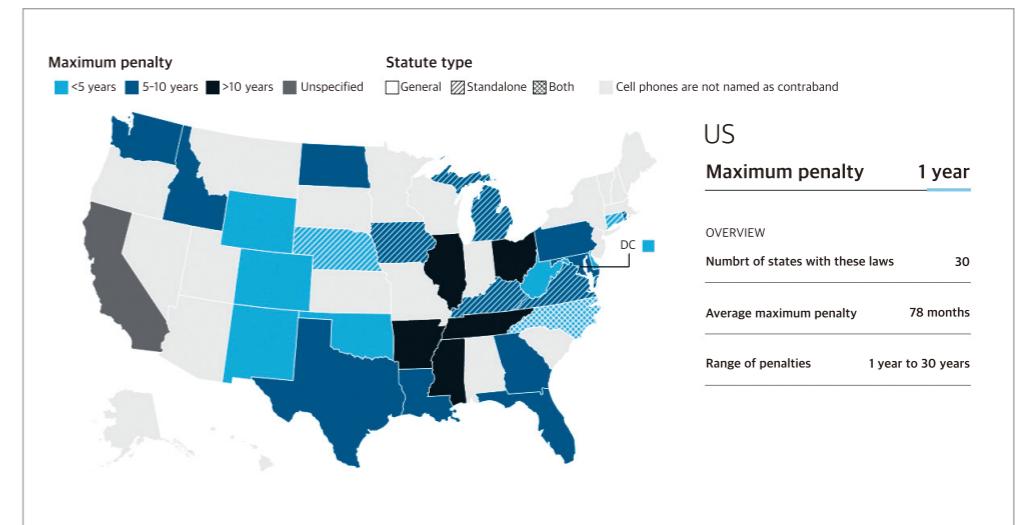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미연방 형법(18 U.S. Code § 1791)에서는 총기류, 폭발물, 금지약물, 마약류, 현금, 핸드폰 등을 교도소 내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범죄활동을 조장하고, 탈출을 계획하고, 증인을 위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수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 2022년 7월 현재, 50개 주 정부에는 교도소와 구치소 내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일부 주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일부 법률은 직원과 방문자 또는 드론을 통해 휴대폰을 교도소로 밀반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¹⁰ Craig, Todd R., Joe Russo, and John S. Shaffer. 2016. "Eyes in the Skies: The Latest Threat to Correctional Institution Security." Corrections Today (November/December): 46-51.

¹¹ <https://www.urban.org/features/contraband-cell-phones-legislative-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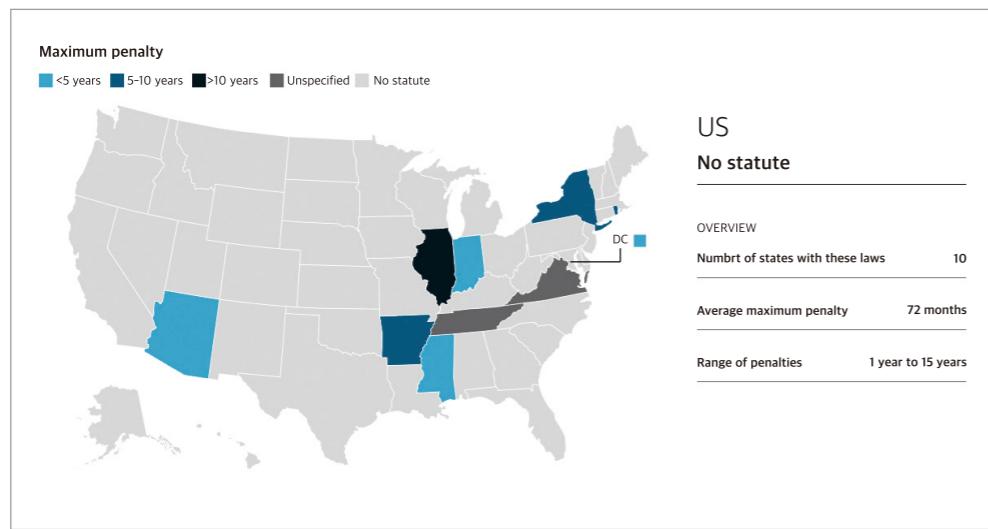
<그림3> 핸드폰 밀반입관련 독립법 존재 유무



음영 처리된 주에는 교도소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다루는 독립법(standalone)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법률에 의한 범죄행위는 일반법, 독립법 또는 둘 다의 일부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핸드폰 밀반입 관련하여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이고 독립법이 존재하는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대 형량이 징역 39개월이고 일반법과 독립법 둘다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도소내 핸드폰 밀반입으로 인한 징역의 평균은 78개월이고, 형기는 짧게는 1년(네브라스카주), 길게는 30년(아칸소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는 직원과 방문자가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주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다. 50개 중 10개주가 직원 또는 방문자가 핸드폰을 교정시설 내에 밀반입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법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반 시 처벌은 징역 평균 72개월, 범위는 1년(인디애나주)에서 15년(일리노이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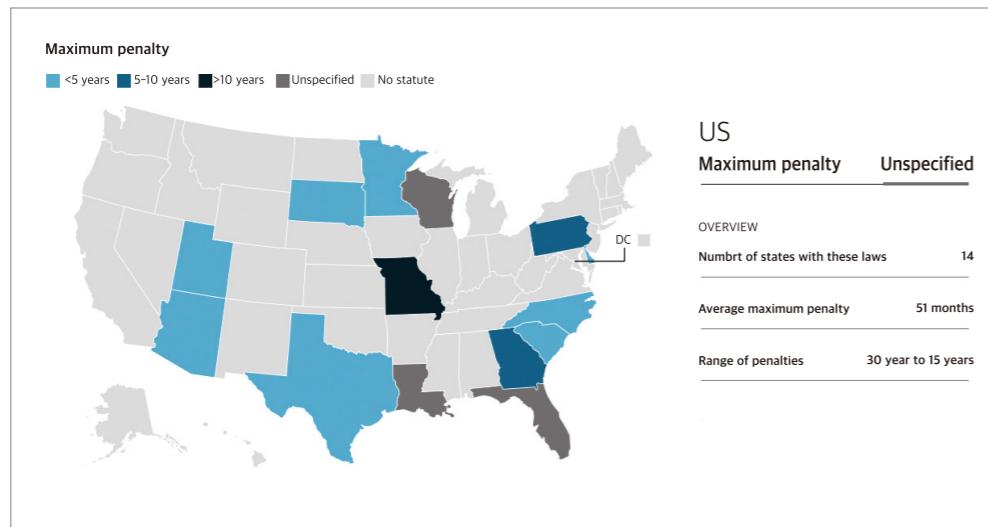


<그림4> 직원과 방문자에 의한 핸드폰 밀반입 관련 독립법 존재 유무



끝으로, 아래 <그림5>는 교정시설 근처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주 현황을 보여준다. 현재 14개 주가 교정시설 근처에서 드론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평균 51개월, 형기는 짧게는 30일(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길게는 15년(미주리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5> 교정시설 근처에서 드론 사용 금지 관련 독립법 존재 유무



2) 기술적 측면

교정시설에서 밀반입된 핸드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관리자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 대응 방안은 크게 교정시설 내 밀반입된 핸드폰을 탐지(detection)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disabling)하는 기술로 구분된다.¹²⁾ 아래 <표2>는 탐지 및 차단 기술별 특징 및 기술을 요약한 표이다.

<표2> 핸드폰 등 무선장치 탐지 및 차단 기술(요약)

Technology solution	Type	Primary Function	Phone status	Estimated cost	Legal	Carrier agreements	Locations(select) Maximum
Body scanners	Passive	Detect	On or off	\$150-300K (facility)	Yes	No	AL, FL, NH
Body Orifice Security Scanner chairs	Passive	Detect	On or off	\$12,000 (unit)	Yes	No	CA, GA, TX
Detect/locate system	Passive	Detect	On in use	\$300,000-\$1.5M (facility)	Yes	No	PA, BOP, SC
Drone detection systems	Passive	Detect	On or off	\$50,000-\$400,000 (facility)	Yes	No(may require FAA coordination)	Pilot tests and acquisition ongoing
Handheld ferromagnetic	Passive	Detect	On or off	\$500-\$1,500 (unit)	Yes	No	Most jails and prisons
Handheld radio frequency detectors	Passive	Detect	On in use	\$500-\$2,500 (unit)	Yes	No	NJ, PA
Jamming solutions	Active	Disable	On in use	\$1.5-\$2.5M (facility)	Federal only	FCC/legal approval	BOP currently testing
Managed access systems	Passive/hybrid	Disable	On in use	\$1.2-\$5.0M (facility)	Yes	Yes	CA, MD, MS, TX
Nonlinear junction detection	Active	Detect	On or off	\$15,000 (unit)	Yes	No	TN
Standardized protocols	Active	Disable	On	\$100,000 (facility)	No	FCC/legal mandate	None
Transportable ferromagnetic	Passive	Detect	On or off	\$7,200-\$10,000 (unit)	Yes	No	Most jails and prisons

Source: Urban research team

Notes: BOP=Bureau of Prisons,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Facility" refers to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technology for an entire prison or jail, while "unit" refers to the for a single unit of the technology(e.g., the price for a single handheld metal detector).

12 Peterson, Kim, Shukla, & Kizzort (2022) Interdiction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interdiction- technologies -and-strategies-contraband-cell-phones>

우선, 밀반입된 휴대폰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 차단기술은 다음과 같다.

- Body Orifice Security Scanners(BOSS): 바디스캐너의 일종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신체 여러 부분에서 휴대폰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강자성 탐지기(ferromagnetic detector)를 의미함.
- 바디스캐너(Body Scanners): 금속 탐지기와 유사하지만 비금속 물체를 포함하여 사람의 신체에서 다양한 항목을 감지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고주파 전파를 사용하여 사람의 3차원 이미지를 생성하고 옷 아래나 체강에 있는 항목을 식별할 수 있음. 바디스캐너는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설에 들어가는 직원이나 재입소하는 수용자와 다른 직원에게 주로 사용함.
- 탐지/위치 시스템(Detect/locate systems): 사용 중인 전화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RF탐지에 결합하여 사용함.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센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므로 그 기능과 운용 범위가 넓음.
- 휴대용 RF탐지기(Handheld RF detectors): 밀반입된 휴대폰의 무선 신호를 감지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을 찾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됨.
- 휴대용 강자성탐지기(Handheld ferromagnetic detectors or Wands): 강자성감지 기술의 휴대버전으로 시설 출입자 수색, 감방 등 접근이 어려운 구역 수색에 주로 활용됨.
- 비선형접합탐지기술(Nonlinear junction detection technologies): 전자 제품에서 발견되는 반도체 접합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감지함.
- 이동형 강자성탐지기(Transportable ferromagnetic detectors): 강자성 구성 요소를 통해 휴대폰을 탐지하도록 최적화된 금속 탐지기를 말함. 직원은 주로 사람이나 시설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전화를 찾기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고, 이 탐지기는 시설의 입구 및 접근 지점(예: 흡입구 또는 레크리에이션 구역의 문)에 주로 설치됨.
- 드론탐지시스템(Drone detection system): 2018년 연방항공국(FAA)은 연방교도소와 해안 경비대 시설 상공 비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음. 많은 교정기관에서 드론이 시설 위로 비행하는 것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드론과 운영자 사이의 RF 신호를 식별하고 교정시설 내 직원에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작동됨.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사람이 시설에 접근하여 울타리 너머로 핸드폰을 던지거나 드론을 활용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더기술을 활용하기도 함.

<그림6> 핸드폰 탐지 장치 예시



탐지능력을 평가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RF탐지기가 시설에서 활성 전화를 감지하는데 일관되게 정확하고 장거리 기능(최대 125피트에서 감지)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 중에 잘못된 경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³⁾

상기 설명된 탐지기술은 시설 내부 또는 시설에 도입되기 전에 전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반면, 차단 솔루션은 전화를 비활성화하여 밀반입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차단기술로는 관리 액세스 시스템(MAS; managed access system), 재밍(jamming or micro-jamming) 기술 및 표준화된 프로토콜(standardized protocols) 등이 있다.¹⁴⁾

¹³ Shaffer, John S., and Joe Russo. 2015. Test and Evaluation of Hand-Held Cell Phone Detection Devices. Rockville, MD: Nation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

¹⁴ Peterson, Kim, Shukla, & Kizzort (2022) Interdiction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interdiction-technologies-and-strategies-contraband-cell-phones>

- 관리 엑세스 시스템(MAS)은 지정된 공간 내에 자체 사설 셀룰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휴대폰 전송을 차단하도록 설계됨. 상용 셀룰러 인프라와 인터페이스 하여 허용 목록에 있는 긴급 전화 통화를 라우팅할 수 있음. 그러나, MAS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무선 통신업체와 협상하기 위한 리소스를 할당하여 시스템이 설정된 경우,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비용은 중간 규모 시설의 경우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음.
- 재밍은 특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는 RF 기반 기술을 의미함. MAS와는 달리 승인된 장치와 승인되지 않은 장치를 구별하지 않으며 전화 통신사와 협력할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음. 재밍기술은 대상 영역 내의 모든 셀룰러 통신을 비활성화함.
-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휴대폰 펌웨어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프로토콜을 설치한 후 기관은 시설 전체의 전략적 위치에 일련의 단거리 센서를 배치하여 밀반입된 휴대 장치가 센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완전히 비활성화시킴. 다만, 교정시설의 실제 적용사례를 아직 찾을 수 없고, 실험실에서만 테스트 된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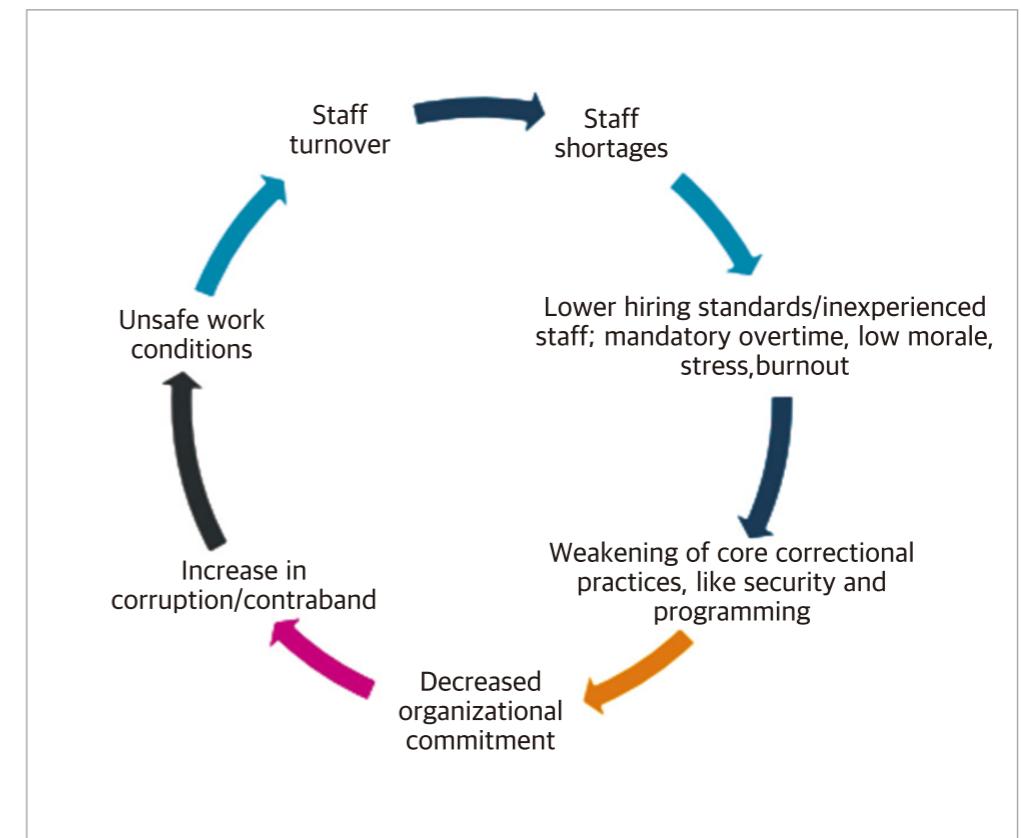
3) 행정적 측면

법적, 기술적 대응과 더불어 밀반입된 핸드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훈련을 통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중요하다. 특히, 교정시설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직적 대응 역량은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정인력은 교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체에서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잘 훈련된 관리자와 교정직원은 효과적인 보안 절차를 적용하고 시설 내 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정기관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잘 훈련되고 업무 경험이 충분한 양질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직원 수준, 경험이 적은 직원, 제도적 보안 유지 및 밀반입된 휴대전화 적발 및 퇴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아래 <그림7> 참조).¹⁵⁾

<그림7> 교정시스템의 지속적인 인력 부족 사이클



조직 문화(교정 직원이 공유하는 신념 및 가치)와 분위기(리더십, 관리 및 지원과 같은 기관의 속성)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원칙은 핸드폰 밀반입을 방지하는데도 적용된다. 즉, 고위관리자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하며 무결성의 가치와 일관된 규칙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높은 보상과 임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¹⁵ Russo, Shukla, Peterson, & Kim (2022) Nontechnological Challenges in Managing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nontechnological-challenges-managing-contraband-cell-phones>

없지만,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핸드폰과 같은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과 같은 내부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은 전문성과 보안 기본을 강조하는 적절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하고, 시설 내 밀반입된 휴대폰의 증가는 직원과 수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정시설의 밀반입된 핸드폰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V. 맷음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밀반입된 휴대폰은 교정시설의 보안과 수용자, 교도관 및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핸드폰을 탐지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포함하여 본 사례연구에서 소개된 기술은 교정관리자가 휴대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 중 하나이다. 교정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가용성 및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정기관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이 불법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고품질 인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교도관의 직위를 전문화하고 직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이론 교육과 지속적인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정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과 관련하여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Craig, Todd R., Joe Russo, and John S. Shaffer. 2016. "Eyes in the Skies: The Latest Threat to Correctional Institution Security." Corrections Today (November/December): 46-51.
- Peterson, Bryce, Megan Kizzort, KiDuek Kim, & Rochisha Shukla (2021) Prison Contraband: Prevalence, Impacts, and Interdiction Strategies. Corrections. <https://doi.org/10.1080/23774657.2021.1906356>
- Peterson, Bryce, KiDuek Kim, Rochisha Shukla & Megan Kizzort (2022) Interdiction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interdiction-technologies-and-strategies-contraband-cell-phones>
- Russo, Joe, Rochisha Shukla, Bryce Peterson, & KiDuek Kim (2022) Nontechnological Challenges in Managing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nontechnological-challenges-managing-contraband-cell-phones>
- Shaffer, John S., and Joe Russo. (2015). Test and Evaluation of Hand-Held Cell Phone Detection Devices. Rockville, MD: Nation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



교정본부장, 충혼탑 건립 부지 등 현장 점검



- 일시·장소** 2. 13.(월) 13:30, 서울남부교정시설
참석 인원 교정본부장, 교정기획과 서기관 등 5명
주요 내용 - 충혼탑 건립 부지 점검
 - 제막식 등 부대 행사 장소 점검 등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정본부TV)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March + Vol. 562

교정본부-국군교도소 업무 협의



- 일시·장소** 2. 22.(수) 10:30, 교정본부장실
참석 대상 - (교정본부) 교정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등 5명
 - (국군교도소) 국군교도소장, 운영과장 등 4명
주요 내용 교정본부·국군교도소 간 업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방안 모색

교정공무원 기장(약장) 변경 계획(2. 21.)



추진 배경

현 실태와 맞지 않는 기장 사용 개선 필요

주요 내용

- 교정행정유공과 동떨어진 10종 기장(약장) 폐지
- 직급, 근속기간, 직위에 맞는 교정행정유공장 발굴
- 개인별 맞춤 조합이 가능한 고정판(4급 이상) 개발 등

2023년 교정행정 브로슈어 발간 계획 수립(2. 24.)



추진 배경

교정본부의 조직, 기능, 주요정책을 담은 교정행정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내·외 홍보자료 활용

추진 개요

- 주요 내용 : 교정조직, 수용관리, 교육·교화, 교도작업 등
- 배부처 : 전국 교정기관, 대학교, 교정행정 관계인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김석구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13일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2022행심 제150호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 취소 등 13개 안건을 심리, 의결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잔반 줄이기' 캠페인 실시

서울구치소는 일일 잔반 배출량이 100kg을 초과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낙기 소장은 "음식물 쓰레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원인임을 인식하자"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 개최

안양교도소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서별 릴레이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전 직원이 음주·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음주운전 균절을 다짐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제27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수원구치소는 2월 1일 제27대 수원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홍연 소장은 취임사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안전하고 질서 있는 수용 문화 조성으로 수원구치소의 새로운 계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직원들을 만나 협력을 당부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교정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15일 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와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김도형 소장은 "임원들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그리고 교정협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 교환으로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2022년 교정위원 표창 수여

인천구치소는 1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0명의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방교정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교정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종교행사 및 교화 활동을 하고 있는 교정위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수여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교정본부 동영상 촬영 협조

서울남부구치소는 2월 8일 교정본부에서 주관하는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관리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촬영에 협조했다. 이날 직원들은 영상제작팀에게 촬영 장소 제공 및 순찰근무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촬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사랑 나눔 행사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7일 관내 두리하나 지역아동센터와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수용자들이 만든 빵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이 행사는 2023년 '쾌찬차'라는 이름으로 재개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2월 16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 균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낭독함으로써 음주운전 균절 의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2월 6일 음주운전 균절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음주운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음주운전 균절 및 실천 결의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균절 다짐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조리원 신규 임용식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1일 신규 조리원에 대한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꽃다발 증정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남인정 조리원은 "직원들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해 성실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 개최

춘천교도소는 2월 8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음주운전 균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신뢰받는 청렴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황진석 소장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기관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대테러 대응 학동훈련 실시

원주교도소는 2월 14일 흑한기 유관기관 대테러 대응 학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등 6개 기관 70명이 참여해 교도소 내 폭발 테러 발생 상황을 대비했으며, 대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서민 소장은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강릉교도소 | 교사 고경오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강릉교도소는 2월 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직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강릉교도소 전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월교도소 | 교위 서찬우

교정시설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2월 21일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교정행정은 물론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2월 13일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의 효과적인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102 기갑여단의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102 기갑여단장은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현장 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2월 13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사회적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소망가족사랑캠프 진행

소망교도소는 2월 24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가족사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가족들에 따뜻한 사랑을 담은 세족식 등을 진행했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용자 가족들이 함께해 수용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윤호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2월 19일 사회적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를 공고히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사랑의 현혈운동 실시

대구교도소는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현혈운동을 실시했다. 김남주 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혈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음주운전 표어·경고 메시지 공모전 개최

부산구치소는 2월 16일 음주운전 근절 표어·경고 메시지 공모전을 개최했다. 신동윤 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라며, 음주운전 없는 부산구치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강중구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홍보영상 촬영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교정공무원 직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이번 촬영은 리모델링한 비상대기숙소, 실외 근무자실, 보안과 휴게실 내 탕비실 등에서 진행됐으며 직원 12명이 홍보영상에 참여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2월 17일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무과, 보안과, 복지과 주무계장 및 업무별 근무자 대표 1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검토가 이뤄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부산교도소는 2월 1일 교정시설 내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를 공식 출범했다. 최진규 소장은 “부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으로 교정기관 내 발생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주)아트코파 업무협약 체결

포항교도소는 2월 20일 사회적 기업인 (주)아트코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원인과 직원, 지역주민의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작품 전시와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장원재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실 해오름 갤러리에 다양한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 할 수 있어 딱딱한 교도소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수용자 도주 대비 긴급출동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2월 15일 수용자 도주 상황을 가정한 긴급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실시됐으며, 도주 등 상황 발생 시 직원의 신속 대응 및 교정장비 활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다.



대구구치소 | 교위 장지윤

소방훈련 및 응급구조훈련 실시

대구구치소는 2월 15일 소방훈련 및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진화체계를 점검했다.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초기 진화를 위한 화재 대응력을 향상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21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전 직원이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안동교도소 | 교사 신동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2월 20일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돋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박상용 소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돼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소방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9일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강성현 소장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임무를 착실히 수행해 훈련이 잘 마무리돼 기쁘고, 이번 훈련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책임감을 내재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음주운전 표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9일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교위 박종덕, 장려상으로 선정된 식품위생서기 김지은에게 포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진수 소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울산구치소는 2월 9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김영광 소장은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2월 6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최재우 소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의 안녕을 저해하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통영구치소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직원 건간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는 3일로 기간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직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대학 졸업 직원 격려

밀양구치소 2월 16일 2023년도 대학 졸업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2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직원 2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졸업 축하와 앞날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정원수 소장은 “힘든 근무 여건 속에도 무사히 졸업을 이뤄낸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배움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지진 대피 및 소방훈련 실시

상주교도소 2월 15일 지진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 진화, 응급 환자 후송, 수용자 대피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과 장비 사용 숙달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경환

제1회 직장공감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15일 ‘제1회 직장공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사랑의 손잡기 운동에 관한 사항,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심리치료팀 교육장 및 야외 쉼터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마음힐링부스와 커피트럭도 함께 마련해 직원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청주교도소는 2월 1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져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곽태업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2월 18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국내 혈액 수급 안정과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4일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규성 소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민원실 현관 바닥 환경 개선

공주교도소는 2월 3일 민원실 현관 바닥 환경을 개선했다. 민원인들이 방문 시 불편을 겪었던 민원실 현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매트를 설치해 미끄럼 사고를 방지했으며, 공주교도소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충주구치소는 2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혈 희망자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명 나눔 및 이웃 사랑 실천과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희빈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2월 6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해 소장 및 각과 과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결의 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6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수용자 도주 대비 긴급출동 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2월 8일 수용자 도주 대비 긴급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진행했으며, 향후 도주 사고 예방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2월 6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 문을 낭독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으며, 음주운전 근절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특별사법경찰대 회의

광주지방교정청은 2월 9일 광주지방교정청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대 업무 개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조직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교도소 | 교위 이현진

교정사고 예방 훈련 실시

광주교도소는 2월 3일 기동순찰팀원 및 수용동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포·제압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란·난동 등 수용자에 의한 위력 행위로부터 신체보호 및 수용자를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교정시설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는 2월 7일 전라북도 소방본부 본부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현장 체험을 통해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청렴·음주운전 근절 등 표어 공모전 개최

순천교도소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렴·음주운전 근절·갑질을질·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표어 공모전은 86건의 표어가 공모됐으며, 각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직업훈련교사 임용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2월 6일 직업훈련교사 임용식을 개최했다. 서호성 소장은 “수용자 사회 복귀에 중요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만큼 훈련생의 전문성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인호 직업훈련교사는 “용접기능공 육성에 최선을 다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 개최

군산교도소 2월 6일 사회적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를 제출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 개최

제주교도소는 2월 7일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장흥교도소는 2월 21일 기존의 보안과 고충처리팀과 조사팀이 통합돼 재편된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조병주 소장은 “교정기관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작동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2월 16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읍 소재 매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최종일 소장은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에게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정읍교도소는 2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헌혈량을 완화하고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수원구치소 교위 이광희



이광희 교위는 현재 출정과 근무자로 검사 조사 입회 시 수용자가 변호사와 함께 조서를 열람하던 중 수상함을 감지한 후 즉시 중단하고, 수용자 소지품 검사를 한 결과 담배 한 갑과 라이터 한 개를 발견했다. 이후 금지 물품임을 고지·회수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창원교도소 교위 김병국



김병국 교위는 현재 보안과 야근 담당자로 기피 근무 구역을 수차례 지원하고 담당했다. 특히,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처우를 통해 교정교화에 노력함은 물론 법률과 제반 규정에 입각해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이광희



이광희 교감은 교정협의회, 신우회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우수용자들이 안정된 수용 생활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해남교도소 운전서기 김모경



김모경 운전서기는 복지과 운전업무 담당으로 평소 관용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성이 발견된 부품을 교체해 교정사고 및 과다한 수리 비용 지출을 예방했다. 특히, 직원들의 차량 수리에도 도움을 주는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2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다람쥐	나비
거북이	개구리
고슴도치	도마뱀
너구리	새
토끼	물고기
달팽이	생쥐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당신의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이웃의 위기를 전해주세요!

온 마을이 함께 돋겠습니다!



“나와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로에서 언제든 도움 요청하세요!”

| 누가, 언제 도움을 요청하나요? |

-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과도한 채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할 때
-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족·이웃의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나와 이웃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도움 / 도움요청 내용 접수



교정동우회가 퇴직 교정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연혁

- 1983. 11. 퇴직 교정공무원 단체 '교정동우회' 창립
- 2013. 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 교정 발전에 기여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 선진화 등 공익 실현
-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등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 지회 : 36개 지회 (1특별회 포함)
- 회원 : 정회원 3,500여 명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사항

-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 강화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 출판 및 판매업 등 수익 사업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 강화 및 봉사 활동 사업 등

전국 각 지회 현황

2023. 3.

지역별	지회별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사무국장
서울	서울	안승용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조경종
	동구구	김태욱		부산강서	전준석
	남부구	황구연		창원	주강돈
	남부교	김범남		진주	조광래
인천 경기	안양	진정화	대전 충청	울산	공정술
	인천	양한용		대전	최관규
	수원	김용철		천안	양해문
	평택	구자현		공주	오재성
강원	의정부	김왕윤	충청	홍성	윤태희
	춘천	홍병걸		청주	최락서
	원주	문정현		전주	이수복
	강릉	강기원		군산	김형섭
대구 경북	대구	이종완	광주 전남 제주	광주	이성재
	대구구	이영준		목포	최운기
	안동	장재덕		순천	조접기
	김천	김진홍		제주	김남경
	경주	박석준		장흥	이상실
	청송	이오우		서울	본회/특별회 송영삼

가입 문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전국 지역별 각 지회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서무담당)에 문의

지역별 각 지회 사무국장에게 문의

